

된다. 총 1500자

차. 수사기관이 검사를 통하여 판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면 이에 대하여 심사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수사기록만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판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카. 영장 발부 전의 불법구속기간을 빼고도 일반형사 사건에서는 30일,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50일간 구속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 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조사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도록 주鸨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가혹 행위를 동반하거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강요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피의자는 거의 없다.

타. 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연장에 대하여 법원이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대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형식상 이유만을 붙여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한번 구속기소된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는 합계 6개월, 제2심에서는 합계 4개월을 넘어 구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 재판을 하려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그런데 신속한 재판과 장기구속을 막기 위한 구속기간의 제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제1회 공판이 시작되는 것은 기소 또는 항소로부터 보통 2달 내지 3달이 지나서이며 그때부터 2주 내지 4주 정도의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건이 복잡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하려면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한 다음 증거조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대신 구속기간만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기부하고 재판을 종결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파. 최근에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금의 수사와 재판관행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하. 수사와 재판은 실제로는 구속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구속되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다음에는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가족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을 모르거나 절차를 청구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보석의 경우에는 정부 보고서의 설명과 달리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많은 데다가 이러한 예외사유, 예컨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주거가 부정할 때등의 사유를 법원이 넓게 해석하여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5. 재소자의 인도적 처우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0조, 제14조 제2항, 제3항 (b)

가. 재소자들은 미결수와 기결수를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지 않는 처우를 받고 있다. 행형법 등은 1955년 국제연합이 채택하여 모든 가맹국에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최저기준규칙”)에 크게 미달하며 많은 부분에서 비인도적이기 까지 하다. 한편 일반 국민의 감시와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수감시설의 열악한 여건에 의하여, 국가와 교도행정당국의 무성의와 무관심에 의하여, 교도담당자들에 의한 비일비재한 폭행과 가혹한 징벌에 의하여 규약 제 10조에 반하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나. 일반적인 상황

행형법은 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미결수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결수들은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을 권리와 규약 제14조 제2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대다수의 수용 시설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제공되는 급식은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저급하며 균형있는 영양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소자들의 주장이다.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복은 매우 조악하다. 이들은 수감시설 내에서는 물론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감시설 이외의 곳에 갈 때에도 수의를 입어야 하는데 이 옷들은 누구든지 재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남자기결수들은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하고 있다.

다. 규율과 징벌

피구금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는 대부분 징벌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다. 그중 금치는 보통 징벌방이라고 하는 작고 창문이 없는 방에 가두는 것인데 여러 계구를 사용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주는 경우가 많다. 감식은 징벌방에 가두어 둔 채 식사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감량하여 주는 것이다. 금치와 감식은 그 자체 비인도적 처우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형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교도관들에 의한 폭력과 고문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정한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재소자들은 실내에서 함부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잠을 자서는 안되며 책을 입수하거나 읽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을 할 수 있다. 또 위 규칙은 감식 또는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취침시간 외에 침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기상후 세면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취침시간까지 정좌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들은 재소자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육체적으로 지나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명백히 가혹한 것이다.

재소자들에 대한 체벌 등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징벌은 주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재소자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감자에 대한 징벌이 가혹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수감자가 징벌에 대하여 이의하고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지금의 법체계에서 징벌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밖에 없는데 이 절차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징벌은 집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법의 보호밖에 방지되어 있다.

라. 위생과 의료

행형법에는 의료진의 자격과 수, 여자 수용시설의 산전 산후 조치에 필요한 설비 및 유자격자를 둔 육아시설의 설치, 의무관의 임무와 광범위한 권한 등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거의가 빠져 있다. 재소자들에 대한 보건의료 진료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마. 접견과 서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참조)

가족 또는 친지의 접견은 기결수는 물론 미결수에 대하여도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 무죄의 추정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도 가족이나 친지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접견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접견시간이 1회에 30분 이내로 한정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허용된다. 미결수의 경우는 하루에 1회 접견이 허용되나

징역형을 받은 기결수의 경우는 원칙으로 1월에 1회로 제한되어 있고 점차 증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언론인이나 그밖에 수감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의 접견이 불가능하다. 언론인 등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은 변호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안을 방문할 수 없는 점과 함께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은폐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서신의 수발 역시 수용시설측에서 엄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또 행형법 시행령 제70조는 교부를 불허가한 서신은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소자가 부친 서신이나 재소자에게 온 서신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바. 집필의 허가

행형법은 피구금자가 집필할 수 있는 경우에 간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관행에 의하면 재소자는 필기도구의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며 서신을 포함하여 어떤 내용의 것이든지 집필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수감자들이 집필의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재소자인권수호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심지어 재판의 준비를 위한 집필마저도 거부당한 일이 있다. 이러한 처우는 매우 가혹할 뿐 아니라 규약 제14조 제2항 (b)호가 보장한 변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로 침해하고 있다.

사. 도서열독

행형법 제33조는 “수형자가 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들은 기결수와 미결수를 막론하고 특히 정치이념서적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 등을 입수하여 읽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열독이 금지되는 도서에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한 이른바 “이적표현물”的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치별받은 도서는 물론 법무부 스스로 만든 금서목록에 해당되는 도서 등 600여종 이상의 도서를 열독금지 대상으로 하여 재소자에 대한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도 반정부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서적, 출판물, 유언물 등에 대하여 수용시설측이 임의로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적표현물을 읽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하기 위하여 그 이적표현물을 반입하여 읽는 것이 금지되는 예도 있다. 일반신문의 반입은 허용되고 있으나 신문기사를 수용시설측이 임의로 삭제하여 버리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수용시설측이 도서의 반입을 불허한 데 대하여 재소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많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각종 정치범들중에는 학생과 지식인등 도서의 열독과 집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열독과 집필의 금지는 특별히 가혹한 처우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항의에 수용시설측은 강압적인 제재를 통하여 충돌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재소자들이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아. 분류처우

법무부에서 제정한 "교정누진처우규정"("처우규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 본인의 사상과 상관없이 "사상확신법"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있으며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수형기간 동안 처우의 완화나 가석방 또는 귀환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소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매우 가혹한 처우라고 평가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장기수들은 가석방이나 사면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한편 "전향"을 하지 않은 장기수들은 2년이상 독거수용을 하지 못하게 한 행형법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독거수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비전향수는 출여와 취업이 금지되어 1평미만의 방안을 벗어날 수 없고 출여와 취업으로 인한 여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밖에도 처우규정에 따라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접견회수, 급여, 교육과 기회 등의 각종 처우면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모든 혜택이 거부된다.

자. 작업

작업에 복무하는 수형자들은 작업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일반인이 노동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최저수입에도 훨씬 못미치는 액수이고 작업 중 사망, 부상 등 재해를 입는 경우 미미한 금액의 위로금과 조위금을 지급받는 이외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차. 교도소 등에 대한 감독과 권리구제

교도소 등에 대한 감독과 권리를 침해 당한 재소자들이 소송 등에 의해 구제를 받는 것은 실효성있게 이행되거나 보장되고 있지 않다. 수용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에 민간인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특히 안기부는 심지어 국회나 감

사원의 감독 조차도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기부가 임연히 사람을 구속하여 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한의 재소자들은 최저기준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처우는 규약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수용시설안에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등에 대하여 재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행형법 등 관련 규정은 최소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재소자들에게 가하여지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조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와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수감제도는 법령의 선언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이지도 옹보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데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1990년 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교도소 등에서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강압적으로 변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정부가 범법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중오감을 부추기는 듯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규약 제10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처우문제

16.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의 금지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8조

가. 고전적인 의미의 노예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약 제8조 제3항(a)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의 경우에는 남한에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있다.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의 뜻은 명백하지 않으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조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의 정의를 원용한다면 남한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고 있다.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 제1조는 "정치적 이익이나 교육으로서의 수단 또는 정치적 견해나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a) 및 "동맹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제재"(d)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강제노동도 금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강제노동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규약이 금지한 강제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결과가 된다.

다.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처벌

노동쟁의조정법은 근로자들의 파업에 친하여 많은 제한을 가지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과 법원은 쟁의로 인하여 그 사용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가 일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넓게 해석하여 중한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쟁의중에 연집회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금지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집시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근로자들이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단체로 거부하는 행위도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 이와 같은 법률과 법적용의 관행은 모두 국제노동기구 제105호 조약이 금지하는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제재”, 즉 강제노동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며 규약 제8조 제3항 (a)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선원의 강제노동

선원들의 경우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는 등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해야 할 것은 밀항단속법의 문제이다. 이법은 대한민국이외의 지역에서 선박으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이 지정한 시간안에 귀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이선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박을 무단 이탈한 이상 이탈 또는 귀선하지 않은 이유나 목적을 불문하고 모두 이선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승선증 질병에 걸리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견디지 못한 선원이 선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하고 조기귀국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공관을 찾아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조차 이선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곤경에 처한 국민에게 법적 구조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이처럼 법률을 선의로 적용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선원들은 일단 승선하여 우리 영해를 벗어난 이상 아무리 선원생활이 견디기 힘들다고 하여도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하선할 수 없고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결

국 선원생활을 계속하면서 노동을 강제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7. 거주·이전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2조, 제14조 제2항

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정부당국에게 자의적으로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 있어놓고 있다. 또한 출국하려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기는 커녕 기소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단지 수사의 필요에 의해 출국을 금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규약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출국금지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출국금지대상자는 자신이 출국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공항등에 나가서 출국절차를 밟으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돼 출국을 하지 못하고 예정된 일정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 주택의 강제철거

국민들은 심각한 주택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정부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곳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 또는 민간기업에게는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들은 도시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증산층 이상이 살게 될 고급 아파트를 건설하는 수가 많다. 이 경우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반면 철거되는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그 곳을 떠나 어디엔가 다른 주거를 찾아야 한다.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많은 경우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특히 철거되는 건물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더욱 고통을 느끼게 된다. 주택이 부족해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현실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맞이줄 주택은 많지 않다. 이들은 주택건설자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거를 빼앗기다고 생각하며 철거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에 굴복할 수 밖에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의 비호를 받는 폭력배들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해 강제철거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철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배들에 의해 수없이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상에서 본 정부의 주택정책과 결부된 강제철거의 관행은 주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7조

가. 국가기관에 의한 사생활침해

경찰과 민간 및 군 정보기관들은 주로 반정부인사들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사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군 복무 중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돼 이른바 '수사협조'(강요에 의해 비밀정보원으로 활동하는 것)를 해오던 윤석양 이병은 1990년 10월 4일 보안사가 수많은 민간인을 시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보안사는 사찰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청, 우편물검열, 불법 압수·수색과 미행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윤이병의 폭로가 있은 뒤 정부는 국방부장관과 국군보안사령관의 책임을 물어 이들을 해임하고 앞으로는 군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곧 거짓임이 드러났다. 1991년 3월 16일 국군기무사령부 서울분실장은 전국 11개 지역 기무부대에 '긴급내사의뢰'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공문에 따르면 기무사 서울분실은 학생운동권 출신 12명을 '의식화용의자'라고 밝히고 이들의 가족관계, 배후사상과 성향, 연고지 주민의 평, 사회문제관 인 접촉 등 평소 언동 등을 파악해 보고 토록 지시했다.

나. 우편물의 검열

임시우편단속법(1948.12.1 법률 제11호) 상 대통령은 우편물이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검열을 위해 체신부 산하에 우정연구소가 설립돼 전국의 우체국에서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 우정연구소는 안기부로부터 검열 대상자 명단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한국전쟁 전에 공산주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 그 후 40여년이 흘러 공산주의의 위협이 전혀 없어졌다. 그럼에도 이 법이 행정부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나 통제 없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우편물을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규약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신서에 대한 자의적 침해에 해당한다.

다. 도청

경찰과 정보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면전 대화와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안기부 서울분실의 기술보안단이 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도청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라. 행정전산망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모든 국민에 대한 78개 항목의 인적사항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사에 설치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수사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정보는 여당 정치인, 기업체, 인물기관, 의료보건조합, 금융기관 등에도 제공 또는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마. 피의사실의 공표

형법 제126조는 기관이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일상적으로 위 법을 위반하며 반정부인사가 피의자가 된 때에는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 국민대중의 지지를 얻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까지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에게는 이 위반행위를 수사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들은 그러한 수사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19. 여성에 대한 차별 - 관련된 규약의 조항: 제3조,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가. 여성을 차별하는 법

1989년 12월 가족법이 개정되어 많은 남녀불평등조항이 개정되는 등의 결과로 여성의 법적 평등은 대체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남아 있다. 가족법은 여전히 호주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또한 이혼시 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부의 재산을 공동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로 있어서는 이혼한 여자가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엄격한 입증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어 여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여성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10 내지 55%의 누진세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15 내지 60%의 누진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적법은 최우선적으로 사람이 출생한 당시에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나라 국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표준으로 삼아 그 아버지가 한국인이 경우 그 사람에게 한국의 국적을 부여한다.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규약 제24조 제3항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용 분야에서의 여성 차별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법규정상으로는 고용상의 남녀차별이나 승진, 배치, 임금, 해고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에서는 남녀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분야에 여성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너무 약하고 정부가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

다. 보육시설의 미비

여성들의 생산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차별요인은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의 태부족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1991년 1월 14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은 민간보육시설에 엄격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당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민간보육시설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지역의 기존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한채, 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기는 어려워 폐쇄될 우려가 크다.

라. 성폭력의 증가

최근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피해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향락산업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 나머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초래된 향락산업의 번창과, 대신문사가 발행하는 스포츠신문, 주간지등이 경쟁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담음으로 인하여 조장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 결사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2조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실제상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적 결사와 노동운동단체의 결성을 제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기존의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의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4부 자료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태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 가지고 있다.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 양심을 깃밟는 야만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은 언론·신당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공포·굶주림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하는 선언을 낸 적이 있다.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탄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몰려서는 안 된다. 열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법의 치매'에 의해 인권이 한탄히 보상되고 있어야 한다.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가 바로 윤리학자도록 힘쓴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국제연합의 출범과 함께 있는 여러 국민은 기본적 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남녀의 동등권이라는 것을 믿어 왔고, 국제연합헌장에서 그 것들을 다시 확인했으며, 또 더욱 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사회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일이 있다.

여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넘세계적으로 확장하고자 기꺼이 기운을 써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인권이란 무엇인가』
이 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 위와 같은 책
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 위와 같은 책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 위와 같은 책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1980년 6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남녀차별이나 충전 배치, 임금, 해고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에서는 남녀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법에서 여성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경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칙이 너무 약하고 정부가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법은 있는데 있다.

나. 보육시설의 미비

여성들의 생산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죄악적인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의 대체주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종사 예상, 출산을 이유로 한 국가공사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이를 끌갈 때가 많아 그 아이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1901년 1월 14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은 전국보육시설에 양적한 시설 확충과 출산 및 육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생활을 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시설을 갖춘 대규모 민간보육시설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현실로, 저소득 계단한 지역의 기관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빛과 꽃뿐이다. 그 결과로 유아기준을 갖추기는 어려워 폐쇄될 우려가 크다.

라. 성폭력의 증가

최근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擡들어서 피해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들에게 큰 교육의 죄악 및 여성과의 성범죄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학교사업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 데다가 1986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초대전 학교사업의 변화와, 대선문서가 발행하는 스포츠선수, 주간지등이 경쟁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힘으로 유통하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다.

【① 우울 우우 : (우울A) 우울증도 학년 105도 우울증·사회성·우울증

【② 우울 우우 : (우울B) 우울증도 학년 105도 우울증·사회성·우울증

【③ 우울 우우 : (우울C) 우울증도 학년 105도 우울증·사회성·우울증
20. 결사의 자유 : 원활한 결사와 조합, 세금과 법의 보호

마. 결속소송

미국과 같은 '이적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실제상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적 결사와 노동운동단체의 결성을 계획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기관의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의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태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 양심을 짓밟는 야만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은 언론·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공포·굶주림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하는 선언을 낸 적이 있다.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몰려서는 안 된다. 일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이 단단히 보장되고 있어야 한다.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가 날로 두터워지도록 힘쓴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국제연합의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국민은 기본적 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남녀의 동등권이라는 것을 믿어 왔고, 국제연합헌장에서 그 것들을 다시 확인했으며, 또 더욱 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사회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일이 있다.

여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범세계적으로 존중하고 또 지켜나갈 것을 서약한 일이 있다.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되는 이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에 근거해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인민과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의 표준으로 삼고자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그러니 각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의식하면서, 회원국 국민과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인민 사이에 다음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즉 교육과 교화를 통해 이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줄 알게 하고, 또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해 이 권리와 자유가 범세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제 1 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理性)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 났으니, 피차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

제 2 조

사람은 누구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그 밖의 신념·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등을 이유로 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각자가 속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건 신탁통치 지역이건, 비자치지역이건 또는 그 밖의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건,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법적·국제적 지위를 이유로 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3 조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제 5 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또 아무런 차별없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는 그런 차별에 관한 교사(教唆)에 대해서도,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사람은 누구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있는 국가법정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를 가진다.

제 9 조

아무도 함부로 체포·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 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관해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된 그리고 공정한 법정이 판장하는 공개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1.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訴追)당한 사람은 누구나, 공개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推定)받을 권리 를 가진다. 소추당한 사람은 그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이유로 형사범 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그 형사 범죄가 행해졌을 때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지워지지 않는다.

제 12 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를 가진다.

제 13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국의 경계 안에서는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라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1.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피해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가 있다.
2.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 소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권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제 15 조

1.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아무도 함부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

제 16 조

1.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를 권리가 있다. 남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혼하게 될 때, 결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스런 그리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2. 아무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 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

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행사·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 19 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전달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 20 조

1. 사람은 누구나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 아무도 어떤 결사에 가입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 21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에서 공무를 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는 통치 권력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 즉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 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스런 선거 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표현된다.

제 22 조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그리고 자국의 구조 및 지원에 알맞게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스런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킬 권리가 있다.

제 23 조

1.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직업을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리고, 실업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2. 사람은 누구나,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알맞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으로 보충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노동시간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 25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 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생활수준에는 의식주·의료·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실업·질병·능력 상실·배우자의 사망·노년 또는 불가항력에서 오는 그 밖의 생계 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2. 모자(母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결혼생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똑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 26 조

1.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기초교육의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고등교육은 능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인종 집단 또는 종교 집단간의 이해·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베풀어지는 교육의 종류 선택에 있어서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 27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창조한 과학적·문화적 또는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 조

사람은 누구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격의 자유스럽고 완전한 발전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에 대해 의무를 진다.

2. 사람은 누구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다음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 제한이란, 주로 남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경을 보장하고, 또 민주사회의 도덕·공공질서·일반 복지에 요청되는 공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마련된 법률상 제한을 말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과 상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이 선언에 어떤 규정도, 특정 국가·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 및 자유 중 어느 하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암암리에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공포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부

제 1조(인민자결권)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그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 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제 2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각 가맹국은 자기 나라 가용(可用)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또는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인 원조와 협력을 통해,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 · 피부색 · 성별 · 언어 · 종교 ·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 재산 · 가문 · 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경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비자국인(非自國人)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제 3조(남녀평등)

가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4조(공공복지에 의한 제한)

가맹국은 이 협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성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민주사회에 있어서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해석 적용상의 주의)

-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벌일 권리를 말한다.
-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한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 부

제6조(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맹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훈련 계획·정책·방법이 포함된다.

제7조(공정·유리 노동조건 향유권)

가맹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 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b)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 선임순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 관계 안에서 적당한 상급 지위로 승진하는 균등한 기회

제8조(노동기본권)

- 가맹국은 다음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법률로 정해진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하지 못한다.
 - 노동조합이 국내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 법률로 정한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권리
 -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의 전기 권리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떤 규정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9조(사회보장)

가맹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제 10조(가정 · 어머니 · 어린이 보호)

가맹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의 형성을 위해 그렇거니와, 한 가정이 부양할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결혼은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전 산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산모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따르는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3. 출생이나 그 밖의 조건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돋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연소자의 정신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그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연령제한을 정해야 한다. 임금을 주어서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를 일 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고, 또 처벌되어야 한다.

제 11조(사회권의 기본규정 · 일반규정 · 기아로부터의 자유)

1.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맹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사람이 누구나 짚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다음을 이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식량의 생산 · 보존 · 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영양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또는 개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b) 식량의 수입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2조(건강권)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맹국은 조치를 취할 것인 바, 그 속에는 다음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저하를 위한, 그리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대책.

(b) 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모든 측면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 치료 및 억제.

(d) 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창출.

제 13조(교육받을 권리)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하는 바, 가맹국은 이 점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교육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스런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모든 나라와 인종 · 종족 ·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권장한다는 것을 가맹국은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다음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한 각종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널리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 (d)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全)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이 장려 또는 강화될 것.
 - (e) 각급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절한 장학제도가 설치되며, 교원의 물질적 조건이 부단히 개선될 것.
3. 가맹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해 줄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교육상의 최저기준에 합치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또한 가맹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의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책임지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언제나 1항에 제시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베풀어지는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제 14조(무상초등의무교육의 실시의무)

이 협약 가맹 당시에 본토에서는 물론이요,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 가맹국은 다음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즉 무상 의무교육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계획을 2년 이내에 작성·채택하되, 합리적인 실시기간이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15조(문화적권리)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a)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b)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c)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가맹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루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3. 가맹국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 벌이는 국제적 연락·협력의 장려 및 발전이 여러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4부

제 16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함에 있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보고를, 이 협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2.
 - (a)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해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그 사본을 보낸다.
 - (b)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맹국으로부터 온 보고의 사본 또는 관련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 또는 보고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에 따라 임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17 조

1. 가맹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이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고를 단계적으로 제출한다.
2. 보고에는 이 협약의 규정된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를 기재할 수 있다.
3. 관련 정보가 가맹국에 의해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앞으로 이미 제출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제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언급만으로 족하다.

제 18 조

국제연합현장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분야의 책임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지우고 있다. 이 책임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앞으로 보고를 보내주는 문제에 관해 전문기구와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다. 그 보고는 협약 준수 촉진 활동에서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인데, 그 활동이 동 전문기구의 활동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협약 실시에 관한 결의 및 권리의 자세한 내용이 이 보고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9 조

가맹국의 경우는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의 경우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인권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검토와 일반적인 권리고를 위해,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용으로, 전기 보고를 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내 줄 수 있다.

제 20 조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반적 권리에 대한 논평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보고가 그 일반적 권리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또는 인권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된 문서가 전기 권리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그 언급에 대한 논평도 위와 똑같다.

제 21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권리가 첨부된 보고와, 가맹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정보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 22 조

이 협약 제4부에 규정된 보고로부터 어떤 사안이 제기될 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술원조 제공에 관련을 가진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그 보조기관 및 전문기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그 사안이란, 전기 기관이 각기의 소관 분야에서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도 점진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 23 조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활동 중에는 다음 방법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조약의 체결, 권리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관계국 정부와 협조하는 가운데 조직된 협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회의와 전문가회의의 개최.

제 24 조

국제연합현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현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스러이 누리고 또 이용할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5 부

제 26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할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 27 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28 조

이 협약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29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표결할 가맹국회의 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제 30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을 가진 권고가 될 수 있으며, 기타 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전문적 성능의 권고를 갖지 충족해 제출될 수

3. 개정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조항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 30 조

제2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 31 조

1. 이 협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공포 및 굴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부

제 1 조(인민자결권)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 주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제 2 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가맹국은 그 영토 안에 살고 또 그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게 대해,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보장해 줄 의무를 진다. 권리의 존중과 보장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를 통해 여건을 마련해 놓지 못한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실현시키려면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필요한 바, 헌법상의 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3.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a)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것을 보장하는 일. 그 침해가 공적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을 경우에도 똑같다.

(b) 구제조치를 구하는 사람의 권리가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또는 그 나라의 사법체제에 따른 관할권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또 사법상의 구제조치의 가능성 을 발전시키는 일.

(c) 구제조치가 허락되었을 경우, 관할권 있는 기관이 그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

제 3 조(남녀평등)

가맹국은 남녀가 평등하게 이 협약에 설정된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긴급사태하의 일탈(逸脱)조치)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또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가맹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협약에 따라 지게 되는 다른 의무에서 일탈(逸脱)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지게되는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사회적 출신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차별을 그 속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1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 1항 및 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일탈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가맹국 중 일탈권을 이용하는 국가는 일탈한 조항과 일탈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가맹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탈조치가 끝나는 날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그 사실을 다른 가맹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석적용상의 주의)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할 권리를 말한다.

2. 가맹국은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 부

제 6 조(생명권)

1.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의 시행 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협약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 박탈이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가맹국이 '집단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는 의무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4.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특사나 감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형선고에 대한 사면·특사 또는 감형은 모든 사건에 주어질 수 있다.

5.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신중인 여자에게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6. 이 협약의 가맹국은 사형폐지를 늦추거나 막기 위해서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원용(援用)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고문·인체실험의 금지)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 8 조(노예·예속·강제노동의 금지)

1.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둑여 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2. 아무도 예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3.(a) 아무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b)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이 따르는 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3항 (a)의 규정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한 형벌의 선고로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한다고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c)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i) 3항 (b)의 규정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구금당하고 있거나, 조건부로 구금이 면제되고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동 또는 용역.

(ii) 군사적 성격을 띤 용역,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iii)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iv)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 또는 용역.

제 9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정해진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2. 체포당하는 사람은 체포당할 때 그가 체포당하는 이유에 대해 통고받고, 또 자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형법상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가 보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절차가 목적하는 바는, 법원이 그 구금의 합법성에 관해 지체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구금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5.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가 진다.

제 10조(수감자 처우)

1.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태고난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다루어진다.

2. (a) 기소당한 사람(미결수)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기결수)과 분리되고,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지위에 알맞는 별도 대우를 받는다.

(b)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다.

3. 행정제도는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그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수감자의 처우를 포함한다.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그 나이와 법적 지위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제 11조(민사구금의 금지)

아무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당하지 않는다.

제 12조(이동·거주·출입국의 자유)

1. 합법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자유롭게 거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3. 1항과 2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위생·도덕·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이 협약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4. 아무도 자국에 돌아오는 권리를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3 조(외국인의 추방)

가맹국의 영토 안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만 추방당한다. 국가의 안전이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외국인은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 관할권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하게 지명하는 사람에 의해 그 사안을 재심 받는 것이 허용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출두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제 14 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할권 있는, 독립된 그리고 편파적이 아닌 법정이 관장하는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도 기관 및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민주사회에서 인정된 도덕·공공질서·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사생활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또는 그 공개가 사법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그 (소송)절차가 부부간의 분쟁 또는 어린이에 대한 후견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사건 또는 소송에서 내려지는 선고라 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2.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당한 사람은 누구나,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사상의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남들과 똑같이 최소한 다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본인이 알아듣는 말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의 성질과 그 이유를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고지(告知)되는 일.
-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기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d)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가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고지되는 일. 사법의 이익으로 보아 변호인이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불수단이 없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

(e)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본인이 신문하거나(변호인으로 하여금) 신문케 하는 일.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똑 같은 조건 아래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켜 이를 신문하는 일.

(f)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의 도움을 받는 일.

(g)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일.

4. 미성년자인 경우 그 절차는 당사자의 나이와 생생 촉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선고와 형량을 법률에 따라 상급법정에서 재심받을 권리가 있다.

6. 확정 판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이 발견된 사실에 의해 오판이었음이 밝혀져서 그 유죄선고가 파기되었거나 사면이 베풀어졌을 경우, 그 유죄선고 때문에 복역하게 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제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본인의 잘못 때문이었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어떠한 사람도 그 나라의 법률과 형사 절차에 따라 유죄·무죄가 확정된 행위로 인해서 또다시 재판에 회부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제 15 조(소급처벌의 금지)

1.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법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당시에 적용되는 형벌 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범죄가 행해진 다음에 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가하기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범법자는 개정된 법률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2.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행 당시에 범죄가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어떤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막는 것이 아니다.

제 16조(법률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조(사생활·명예·평판의 존중)

1.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2.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예배·의식·행사·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3.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공공의 안녕·공공질서·공중건강·도덕·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자녀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베푸는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 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술형태·본인이 선택하는 그 밖의 전달수단으로 국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권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제 20조(전쟁선전 등의 금지)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2. 차별·적대감정·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제 21조(집회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법률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제 22조(결사의 자유·단결권)

1.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권리의 자유로운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대해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동 조약의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거나,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23조(가정 및 결혼에 관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
3.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그리고 완전한 동의 없이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배우자 쌍방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이혼하게 될 때 평등한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 24조(어린이의 권리)

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지위로 보아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가정·사회·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2. 어린이는 누구나 출생 직후에 등록되고 또 이름을 가진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국적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 25조(공무 참여)

시민은 누구나, 제2조에 규정된 어떠한 차별 또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음을 행할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것.
- (b)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또 피선되는 것. 이 선거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되고, 또한 선거인의 자유스런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것이라야 한다.
- (c) 일반적이고 평등한 조건 아래 자국의 공무에 나서는 것.

제 26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률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법률은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또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 27조(소수민족 보호)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 권리의 부정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란, 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자신들의 문화를 누리거나 자신들의 종교를 신봉·실천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부

제 28조

1.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하의 조문에 규정된 직무를 맡는다.
2. 위원회는 가맹국 국민 중에서 고결한 인격을 갖추었고 또 인권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사법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의 참여가 유익하다는 점이 고려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29조

1.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었고 또 가맹국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위원회 위원이 선출된다.
2. 가맹국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사람은 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누구나 재지명을 받을 수 있다.

제 30조

1. 위원회 위원의 첫번째 선거는 이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3개월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을 지명한 가맹국을 적시하여 작성하고, 선거일의 적어도 1개월 전에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고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되는 가맹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의 정족수는 가맹국의 3분의 2로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맹국 대표가 던진 최대 다수 및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피지명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 31 조

1. 위원회는 같은 국가의 국민 2명 이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의 선거에 즈음하여 위원의 배분이 지리적 형평을 유지하고, 또 서로 다른 문명 형태와 주요한 법률 체계가 대표되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 32 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위원은 재지명을 받았을 경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첫번째 선거가 있는 직후에 제30조 4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은 앞에서 말한 9명의 이름을 제비로 뽑는다.

2. 임기 만료에 즈음한 선거는 앞에 나온 여러 조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 33 조

1.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잠정적 부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나머지 위원들이 일치하여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장은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2. 위원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했을 경우, 의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사망 또는 사임한 날로부터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제 34 조

1.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석이 선언되었는데 잔여 임기가 공석선언 때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가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가맹국에 알린다. 각 가맹국은 공석을 채울 목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보낼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여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앞에 나온 규정에 따라서 실시된다.

3.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언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위원회 위원은 동 조문의 규정에 따라 의석이 없어진 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 35 조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총회가 위원회의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36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규정된 직무를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직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

제 37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첫번째 회의 이후로는 절차 규칙에 정해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에 자리잡은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제 38 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 개시에 앞서, 공개된 위원회 석상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한다.

제 39 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정한다. 절차 규칙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위원회의 정족수가 12명이라는 것.
- (b)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제 40 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자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그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향상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보고를 다음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 (a) 자국에 대해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고, 동 사무총장은 그 보고를 위원회 앞으로 보내어 검토 받도록 한다. 보고에는, 이 협약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난점이 기재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다음, 그 보고의 사본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낼 수 되, 그 전문기구의 권한에 속한 사항과 관계되는 부분을 보낸다.
4. 위원회는 가맹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보고 및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해당국 앞으로 보낸다. 또한 위원회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사본과 함께(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견해를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5. 가맹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견해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제 41 조

1. 가맹국은 위원회의 다음 권한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어느 때든지 행할 수 있다. 그 권한이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가맹국 중 어떤 나라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가맹국의 통보를 접수하고 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의 그와 같은 권한을 자국에 관해 인정한다는 선언을 행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통보가 접수되고 또 검토된다. 그와 같은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통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a) 한 가맹국이 볼 때에 다른 가맹국이 이 협약의 조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서면 통보로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 수령국은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안에 그 사안을 밝히는 설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통보 송부국 앞으로 보낸다. 그 문서에는 그 사안에 관해 이미 취해진, 취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국내 절차와 국제 수단에 대한 언급이, 가능한 그리고 타당한 한도까지, 포함되고 있어야 한다.
- (b) 첫 통보가 수령국에 의해 접수된 지 6개월 안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안이 조정되지 아니했을 경우, 위원회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사안을 위원회에 위임할 권리를 쌍방이 모두 가진다.
- (c) 그 사안에 관해 이용이 가능한 국내의 구제 조치가 취해졌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구제 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d)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 (e) (c)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를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에서 협의를 주선한다.

(f)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안이 어떠한 것이건,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g)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은 그 사안이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을 때 대표를 출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국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b)에서 말하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를 제출한다.

(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i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계 가맹국의 의견서 및 구두 진술의 기록을 첨부한다.

2. 이 조문의 (모든)규정은 규약 가맹국 10개국이 1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가맹국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통고로써 어느 때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 조문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철회가 통보의 주제인 사안의 검토를 막지 못한다. 선언 철회의 통고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접수된 후에는, 그 가맹국이 새로이 선언을 행하지 않는 한, 그 가맹국의 새로운 통보는 접수되지 않는다.

제 42조

1.

(a)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게 위임된 사안이 관계 가맹국 쌍방에 만족을 주게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를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의 협의를 주선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 쌍방이 받아들이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3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의 비밀투표로 합의를 얻지 못한 조정위원회위원을 선출하되 위원회위원 중에서 3분의 2 다수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조정위원회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관계 가맹국·협약 가맹국이 아닌 국가·41조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3. 조정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또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보통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의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가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서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사무국은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를 위해서도 용역을 제공한다.

6. 위원회가 접수한 그리고 취합한 정보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무엇이나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안을 다루기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에 대해 통지를 보내기 위해 위원회의장에게 보고를 제출한다.

(a) 12개월 이내에 사안의 검토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안의 검토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b)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과 해결책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c) (b)에서 말하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다음을 수록한다.

- 관계 가맹국간의 분쟁과 관련되는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 사안의 우호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또한 이 보고서에는 관계 가맹국이 제출한 진술서와 구두진술의 기록이 포함된다.

(d) (c)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보고가 제출될 경우, 관계 가맹국은 조정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수락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그 보고를 접수한 지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장 앞으로 통고한다.

8. 이 조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임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관계 가맹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작성한 예산안에 따라서 조정 위원회위원의 모든 비용을 평등하게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9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가맹국의 비용 부담에 앞서 조정위원회의 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가진다.

제 43 조

위원회위원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조정위원회위원은 국제연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누리기로 되어 있는 편의·특권·면제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이 편의·특권·면제는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 44 조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와 조약에 의해서, 또는 그 기본 문서와 조약에 따라서 인권분야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상기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적용된다. 또한 가맹국간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이 있을 경우,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가맹국이 그 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제 45 조

위원회는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국제연합 총회 앞으로 제출한다.

제 5 부 권리에 관한 조약

제 46 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로이 누리고 또 이용할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6 부

제 48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한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50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가맹국회의 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52조

제4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53조

1. 이 협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가맹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약칭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 규정의 시행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한다)가,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통보를 접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이 의정서에 가맹하는 협약 가맹국은, 위원회가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국 국민의 통보를 접수·검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 통보가 의정서에 가맹하지 아니한 협약 가맹국에 관계가 되는 것일 경우, 위원회는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2조

제1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에 열거된 권리 중 어느 하나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검토를 요구하는 서면 통보를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은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취했고 달리 방법이 없어야 한다.

제3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 중, 익명으로 된 것·통보 제출권의 남용으로 생각되는 것·협약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접수 불능으로 처리한다.

제 4 조

- 제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해, 협약의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있 의정서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 주의 환기를 받은 국가는 6개월 이내에 사안을 밝히는, 그리고 제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동안에 취한 구제조치를 밝 는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5 조

- 위원회는 개인 및 관계 가맹국이 보내온 모든 서면 정보에 비추 서,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검토한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개인으로부터 온 통보· 검토하지 않는다.
 - 같은 사안이 다른 국제적 심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의· 고 있지 않을 것.
 -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그 개인이 취했고 달 리 방법이 없을 것. 그러나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 고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제 6 조

위원회는 협약 제45조에서 말하는 연차보고에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시킨다.

제 7 조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해 채택된 '식민지 및 그 인민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의정서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주관 아래 체결된 그 밖의 국제조약 및 문서에 의해서 전기 인민에 게 부여된 청원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8 조

-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의해 비준 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한다.
-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의정서에 서명했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 비 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 9 조

-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하여,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또는 가입 절차를 밟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11 조

-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의정서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가맹국회 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 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 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 출된다.

-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 개정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 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 12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면 통고로 언제든지 탈퇴를 선언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탈퇴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 이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탈퇴 선언은 그 통보에 대해 이 의정서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 13 조

이 의정서의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 (c)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선언.

제 14 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의정서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國家保安法

〔1980年 12月 31日〕
〔法律第3318號全改〕
改正 1987. 12. 4. 法3993號 1991. 5. 31法4373號

- 第1章 總 則(第1條～第2條)
第2章 罪與 刑(第3條～第17條)
第3章 特別 刑事訴訟規定(第18條～第20條)
第4章 報償과 援護(第21條～第25條)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①이 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法을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1. 5. 31)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僞稱하거나 國家를 淚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内外의 结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團體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 (改正 1991. 5. 31)

②削除 (1991. 5. 31)

第2章 罪與 刑

第3條【反國家團體의 構成 등】 ①反國家團體를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과의 別에 따라處罰한다.

1. 首魁의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幹部 기타 指導의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 이외의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他人에게 反國家團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罪를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第1項第3號의 罪를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⑥削除 (1991. 5. 31)

第6條【潛入·脫出】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그 目的에 부합하여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情에 따라處罰한다. (改正 1991. 5. 31)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의 指令를 받거나 반기 위하여 또는 그 目的에 부합하여 行爲를 한 때에는 그 각 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③削除 (1991. 5. 31)

④削除 (1991. 5. 31)

第9條【便宜提供】 ①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索砲·彈藥·火藥 기타 武器를 제공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②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金品 기타 財產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가.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國家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知識인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나. 가.목의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刑法 第115條·第119條第1項·第147條·第148條·第164條 내지 第169條·第177條 내지 第180條·第192條 내지 第195條·第207條·第208條·第210條·第250條第1項·第252條·第253條·第333條 내지 第337條·第339條 또는 第34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4. 交通·通信, 國家의 公共團體가 사용하는 建造物 기타 重要施設을 破壊하거나 사람을 끌고, 誘引하거나 艦船·航空機·自動車·武器 기타 物件를 移動·取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5. 刑法 第214條 내지 第217條·第257條 내지 第259條 또는 第262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에 속하는 書類 또는 物品을 捐壞·隱匿·偽造·變造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塵動·宣傳하거나 社會秩序의 淚亂을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事實을捏造하거나 流布한 때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罪를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④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罪를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⑤第5條【自進支援·金品收受】

①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를 支援할 目的으로 自進하여 第4條第1項 각 條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第4條第1項의 例에 의하여 處罰한다.

②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收受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⑤削除 (1991. 5. 31)

第8條【會合·通信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와 會合·通信 기타의 方法으로 連絡을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②削除 (1991. 5. 31)

③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1991. 5. 31)

④削除 (1991. 5. 31)

第9條【便宜提供】 ①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索砲·彈藥·火藥 기타 武器를 제공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②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金品 기타 財產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潛伏·會合·通信·連絡을 위한場所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者는 10년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1991. 5. 31)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 第1項의 罪를 犯한 目的으로 謂備 또는 隨謀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⑤ 削除(1991. 5. 31)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 한다)·第4項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년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处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改正 1991. 5. 31)

第11條 【特殊職務 遺棄】 犯罪搜查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그 職務을 遺棄한 때에는 10년이하의 懲役에 处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 【誣告,捏造】 ①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이 法의 罪에 대하여 誣告 또는 偽證을 하거나 證據를 捏造·湮滅·隱匿한 者는 그 각 案에 惩罰에 处한다. ② 犯罪搜查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나 이를 補助하는 者 또는 이를 指揮하는 者가 職權을濫用하여 第1項의 行為를 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다만, 그 法定刑의 最低가 2年未満일 때에는 이를 2年으로 한다.

第13條 【特殊加重】 이 法, 軍刑法 第13條·第15條 또는 刑法 第2編 第1章內亂의 罪·第2章 外患의 罪를 犯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 执行을 終了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执行을 終了하거나 执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第3條 第1項 第3號 및 第2項내지 第5項, 第4條 第1項 第1號 중 刑法 第94條 第2項·第97條 및 第99條, 同項 第5號 및 第6號, 第2項내지 第4項, 第5條, 第6條 第1項 및 第4項내지 第6項, 第7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刑에 대한 法定刑의 最高를 刑으로 한다.

第14條 【資格停止의併科】 이 法의 罪에 관하여 有期懲役刑을宣告할 때에는 그 刑의 長期이하의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 (改正 1991. 5. 31)

第15條 【沒收·追徵】 ① 이 法의 罪를 犯하고 그 報酬를 받은 者에는 이를 没收한다. 다만, 이를 没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額을 追徵한다.

② 檢事은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訴追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押收物의 폐기 또는 國庫歸屬을 命할 수 있다.

第16條 【刑의 減免】 다음 각 案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1. 이 法의 罪를 犯한 후 自首한 때

2.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이 法의 罪를 犯한 他人을 告發하거나 他人이 이 法의 罪를 犯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削除(1991. 5. 31)

第17條 【他法適用의 排除】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労動爭議調整法 第9條의 规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第18條 【参考人の 拘引·留置】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이 法에 정한 罪의 参考人으로 출석을 要求받은 者가 정당한 理由없이 2回이상 出席要求에 응응한 때에는 管轄法院判事의 拘束狀을 發付받아 拘引할 수 있다.

② 拘束狀에 의하여 参考人을 拘引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接近한 警察署 기타 적당한 場所에 입시로 留置할 수 있다.

第19條 【拘束期間의 延長】 ① 地方法院判事는 第3條 내지 第10條의 罪로서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搜查를繼續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2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한하여 许可할 수 있다.

② 地方法院判事는 第1項의 罪로서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搜查를 계속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许可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의 延長은 각 10日以内로 한다.

第20條 【公訴保留】 ① 檢事은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刑法 第51條의 事項을 참작하여 公訴提起를 保留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의하여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公訴의 提起없이 2年을 경과한 때에는 訴追할 수 없다.

③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法務部長官이 정한 監視·保導에 관한規則에違反한 때에는 公訴保留를 取消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의하여 公訴保留가 取消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第208條의 规定에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规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规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該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章 報償과 授護

第21條 【賞金】 ①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賞金을 支給한다.

②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知하여 逮捕한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도 第1項과 같다.

③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逮捕할 때 反抗 또는 交戰狀態下에서 부득이한 事由로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에準하여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押收物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押收物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제공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의 规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法施行前에 한 反共法의 规定에 의한 賞金 또는 報勞金의 請求는 이 法의 规定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待遇에 관한法律에 의한 公傷軍警 또는 殉職軍警의 遺族으로 보아 報償할 수 있다. (改正 1991. 5. 31)

第24條 【國家保安有功者 審查委員會】 ① 이 法에 의한 賞金과 報勞金의 支給 및 第23條에 의한 報償對象者를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 소속하여 國家保安有功者 審查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1991. 5. 31)

② 委員會는 審議上 필요한 때에는 參考人을 要求하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要求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審議上 필요한 때에는 參考人을 要求하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要求할 수 있다.

第25條 【軍法被適用者에 대한 準用規定】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軍事法院判事 第2條第1項 각 案의 1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이 法의 规定 중 刑事는 刑事訴訟法 第202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한하여 许可할 수 있다.

② 地方法院判事는 第1項의 罪로서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搜查를 계속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许可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의 延長은 각 10日以内로 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反共法은 이를 废止한다. 다만, 同法 废止前의 行為에 대한 刑罰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规定에 의한다.

第3條 【 다른法律의改正 및 다른法律의 관계】 ①~③ <해당法律에 緊要>

④ 이 法施行當時 다른 法 속에서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法律에 갈음하여 이 法을 引用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规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规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該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⑤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法務部長官이 정한 監視·保導에 관한規則에違反한 때에는 公訴保留를 取消할 수 있다.

⑥ 第3項에 의하여 公訴保留가 取消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第208條의 规定에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规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规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該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① 舊刑法 第2編 第2章 内亂에 관한 罪, 第3章 外患에 관한 罪, 舊國防警備法 第32條, 第33條, 舊海岸警備法 第8條의 2, 第9條, 舊非常事態下의 罪에 대한 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刑法 第2編 第1章 内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 軍刑法 第13條, 第15條의 规定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刑法 第2編 第1章 内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 軍刑法 第13條, 第15條의 规定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第1項과 같다.

②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知하여 逮捕한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도 第1項과 같다.

③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逮捕할 때 反抗 또는 交戰狀態下에서 부득이한 事由로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에準하여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报勞金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报勞金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提供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도 조한 같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报勞金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报勞金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提供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도 조한 같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报勞金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报勞金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提供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도 조한 같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报勞金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报勞金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提供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도 조한 같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报勞金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报勞金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提供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도 조한 같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报勞金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报勞金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提供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도 조한 같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报勞金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报勞金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提供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도 조한 같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报勞金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报勞金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提供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도 조한 같다.

④ 第22條 【報勞金】 ① 第21條의 경 우에 报勞金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报勞金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提供한 者에게는 그 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报勞金은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规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施行後에는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도 조한 같다.

11. 犯罪의 要旨
12. 裁判장이 記載를 命한 事項 또는 訴訟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記載를 許可한 事項
13. 被告人 또는 農護人에게 最終陳述할 機會을 주 証實과 그 陳述한 事實
14. 判決其他의 裁判을宣告 또는 告知한 事實

■ [公判調書] 50-56, 法院 10-7, ■ [公判記載] 38-9, ■ [上訴撤回] 352-2, ■ [公判構成] 275, ■ [代理人] 26-28, ■ [代表者] 27, ■ [辯護人] 30-33, ■ [輔助人] 29, ■ [通譯人] 180, ■ [出庭人] 26-277, ■ [公開審理] 27-3-107, ■ [法規] 53, ■ [公訴事務通知] 285-298, ■ [檢告人] 286-303, ■ [公開調書要件] 48-2, ■ [原據調查方法] 290-293, ■ [檢證] 299-300, ■ [檢收] 106-107, ■ [辯論] 299-300, ■ [302-303-305-388-443], ■ [辯護] 303, ■ [裁判告知] 42-43, ■ [日刑訴規] 44

■ [法院의 參與主事]가 公判에 参加하여 單獨刑에 관한 사항의 基本內容은 公判調書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刑事事件의 罪刑이 參與主事의 裁判과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으므로, 參與主事가 刑事를 裁判하여 말라. 檢事과 함께 金仙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槍物收存과 主體가 될 수 없다. (1980. 10. 14 80-1373)

第 52 條 【公判調書作成上の 特例】 公判調書에는 第 48 條의 第 3 項乃至 第 7 項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한다. 但 陳述者の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에 關한 部分을 임아주고 增減變更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을 記載하여야 한다.

■ [公訴] 34, ■ [檢證] 作成방式] 48-58, ■ [公判調書要件] 50-51, ■ [日刑訴規] 45

第 53 條 【公判調書의署名】 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書記官이나 書記가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裁判長이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하며法官全員이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書記官 또는 書記가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公判調書] 51, ■ [公判庭의 執理] 275, ■ [裁判員] 53-54, ■ [日刑訴規] 46

■ [公判에 立卷한 書記가 故로 인하여 公判調書에署名捺印이 불능한 경우에는, 裁判長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하며, 다른 書記로 하여금 立卷 書記에署名捺印하도록 한다.] (1953. 4. 28 4285-107)

第 54 條 【公判調書의整理等】 ① 公判調書는各公判期日後 5 日以內에迅速히 整理하여야 한다.

② 次의 公判期日에 있어서는前回의 公判審理에 關한 主要事項의 要旨를 調書에 依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檢事, 被告人 또는 農護人이 그變更를 請求하거나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要旨를 公判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은 그 請求 또는異議에對한 意見을 記載하게 할 수 있다.

■ [公判調書] 51-1, ■ [公判期日] 267, ■ [異議] 48-49, ■ [告知方式] 42-43, ■ [告知事実記載] 51-2, ■ [日刑訴規] 48-50

第 55 條 【被告의公判調書閱覽權】

① 農護人이 없는 때에는 被告人은公判調書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被告人이 調書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調書의 朗讀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前 2 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公判調書는有罪의 證據로 할 수 없다.

■ [公判調書] 54-2, ■ [公判調書閱覽權] 35-36

■ [日刑訴規] 49

第 56 條 【公判調書의證明力】 公判期日의 訴訟節次로서 公判調書에 記載된 것은 그 調書만으로서證明된다.

■ [公判調書의 記載] 51-54-2, 52-1, ■ [日刑訴規] 52

■ [起訴이 無失되어 現存되거나 아니한 이상 原本調決은 그 기초되는 事實基準 및 証據調査 없음에 基づ한다.] (1950. 12. 4 4283刑上9)

■ [公判調書에 檢事의 出席 명예에 關하여 相應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그 公判期日에 進行한 調査를 允하는 誓法이다.] (1967. 11. 14 67-1121)

第 56 條 【公判調書의錄取】 ① 被告人, 證人 또는 其他의 訊問에 있어서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그 問答의 全部 또는一部를 速記者로 하여 금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使用하여 이를 錄取할 수 있다.

② 被告人, 農護人 또는 檢事는各自의 費用負擔으로 前項의 筆記 또는 錄取를 할 수 있다.

■ [公判調書] 1961. 9. 1

■ [刑訴規] 37-37-40, ■ [公判調書의 記載] 51-54, ■ [日刑訴規] 40

第 57 條 【公務員의書類】 ① 公務員이作成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作成年月日과 所屬公務所를 記載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書類에는 印記하여야 한다.

■ [公務員의書類] 118, ■ [書類作成방式] 48-49, ■ [日刑訴規] 50-51, ■ [日刑訴規] 58

■ [公判調書에] 間印이 없다는 事由으로서 調査를 无效화 할 수 있다. (1960. 1. 29 4292刑上74)

第 58 條 【公務員의書類】 ① 公務員이書類를 作成함에는 文字를 變改하지 못한다.

② 插入, 刪除 또는 欄外記載를 할 때에는 이 記載한 곳에捺印하고 그 字數를 記載하여야 한다. 但 刪除한 部分은 解得할 수 있도록 字體를 存在하여야 한다.

■ [公務員의書類] 118, ■ [書類作成방式] 48-49, ■ [日刑訴規] 50-51, ■ [日刑訴規] 58

■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書記官이나 書記가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公判調書] 50-51, ■ [日刑訴規] 45

第 59 條 【公判調書의署名】 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書記官이나 書記가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裁判長이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한다. 印章이 없으면 指印으로 한다.

■ [外國人의署名] 50-51

第 7 章 送達

第 60 條 【送達받기 为한 申告】 ①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農護人 또는 辅助人이法院所在地에 書類의送達을 받을 수 있는 住居 또는 事務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 또는 事務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法院所在地에 住居 또는 事務所 있는 被告人을 送達領受人으로 選任하여 連名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 送達領受人은 送達에 關하여 本人으로 看做하고 그 住居 또는 事務所는 本人의 住居 또는 事務所로 看做한다.

③ 送達領受의 選任은 같은 地域에 있는 各審級法院에 關하여 效力이 있다.

④ 前 3 項의 規定은 身體拘束을 關한 者에게 通用하지 아니한다.

■ [公判調書] 42, ■ [代理人] 26-28-277, ■ [輔助人] 27, ■ [辯護人] 33-90, ■ [住居] 18-19, ■ [日刑訴規] 2-1, ■ [申告] 26-29, ■ [送達] 61, ■ [送達領受人] 76-1-1, ■ [日刑訴規] 62

■ [第 1 項의 規定이 身體拘束을 關한 者는 그 事由에서 身體를 拘束당한 者를 자비하는 것 이요, 다른 事由으로 身體拘束을 關한 者는 이 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相當하다.] (1976. 11. 10 76-69)

第 61 條 【郵遞에 부치는 送達】 ① 住居, 事務所는 送達領受의 選任을 申告하여 1 者가 그 申告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는 書類를 郵遞에 부치거나 其他適當한 方法에 關하여 送達할 수 있다.

② 書類를 郵遞에 부친 境遇에는 到達되며 送達된 것으로 看做한다.

■ [中告] 60, ■ [民事訴訟法의準用] 66, ■ [民訴] 172, ■ [判決主張] 411-476, ■ [民訴] 111-1, ■ [日刑訴規] 63

第 62 條 【檢事에對한 送達】 檢事에 对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

야 한다.

■ [檢事에 대한 送付] 44

第 63 條 【公示送達의原因】 ① 被告人的 住居, 事務所와 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② 被告인이裁判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境遇에 있어서法院는 다른 方法으로 送達할 수 있다.

■ [公判調書] 1979, ■ [公示送達의 方式] 64, ■ [日刑訴規] 64

■ [公示送達은 被告人와 住居, 事務所와 現在地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979. 1. 17 78-46]

第 64 條 【公示送達의 方式】 ①公示送達은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法院이命한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②公示送達은法院書記官 또는 書記가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法院揭示場에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1961. 9. 1)

③法院은 前項의 事由를 官報나 新聞紙上에 公告할 것을 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이를 通達하는 것은 아니고, 俗하고는 有する 때에는 檢事의 送達과同一한 效力이 있다.

1. 被告인이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2. 被告인이 證據를 滅失할 意慮가 있는 때
3. 被告인이 逃亡 또는 逃亡할 意慮가 있는 때

④ 5 월이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該當하는 事件에 關하여는 前項의 1號의 境遇을 除한 外에는 送達할 수 없다. (改正 1973. 1. 25)

■ [刑訴規] 46, ■ [拘束] 73-75-77-78-83, ■ [拘束令狀執行] 87, ■ [拘束期間] 92, ■ [拘束取消] 93, ■ [拘束執行停止] 101-102-92-21, ■ [拘束適用] 92-8, ■ [拘束] 214-2-1, ■ [不服] 403-416, ■ [檢察機關에 대한 拘束] 201-206, ■ [罰金] 201-206, ■ [日刑訴規] 42-2, ■ [新舊版] 201-206, ■ [少年] 49, ■ [日刑訴規] 59-2, ■ [日刑訴規] 60-65, ■ [期日通知] 268, ■ [日刑訴規] 51-2, ■ [日刑訴規] 65

■ [通法] 76, ■ [期日] 86 또는 通知에 關하여法院에 關하여는 告知한 때에는 그 期日을 知하는 不是常在 訴訟關係人에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1970. 10. 13 70-1619)

第 65 條 【民事訴訟法의準用】 書類의送達에 關하여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民事訴訟法을 準用한다.

■ [特別規定] 62-64, ■ [送達에 대한 民事] 86, ■ [民訴] 160-181, ■ [日刑訴規] 54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6, ■ [日刑訴規] 60-65

■ [再審法院은 再審開始에 정하여 한 時의執行停止] 201-206, ■ [檢事] 201-206, ■ [檢事에 대한 拘束] 201-20

第48條 [本項 第3號] 이 **55** (1946. 11. 15. 4279 호에 84)

第134條 【押收職物의 被告者에 選付】
押收한 職물은 被告者에게 選付할 理由가 명백한 때에는 被告者事件의 終結前이라도 決定으로 被告者에게 選付할 수 있다.

〔原告의 召喚〕 333 [2(3), (決定) 37호 3·3·39, (抗告) 403, (準用規定) 219 * 日刑訴 124]

第135條 【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 의通知】 前 3條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 被告者, 被告人는 緩護人에게 미리通知하여야 한다.

〔(准用規定) 132-134, (準用規定) 219
被告者에게 召見을 選付한 檢事을 주지 아니한
한 決定은 檢事이 被告者에게 選付하는 決定이다. (1980. 5. 20. 33)

第136條 【受命法官, 受託判事】 ①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判事에게 嘔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管轄區域內에 없는 때에는 그 目的의 所在地 地方法院判事에게 轉職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受託判事が 行하는 押收는 搜索에 關하여는法院이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 決定을準用한다.

〔(抗告) 416, (檢) 24, (準用) 145 * 日刑訴 125]

第137條 【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 第2項의 決定에 依한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가拘束令狀을 執행할 때에는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拘束令狀執行〕 81-85, (準用規定) 119-120-123
* 日刑訴 126

第138條 【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과 第127條의 決定은 前條의 決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의 搜索에 準用한다.

〔執行中止와 出入禁止〕 119, (執行과 必要한 處分) 120, (真正者參照) 123, (執行中止와 必要한 處分) 127 * 日刑訴 127

第11章 檢 證

第139條 【檢 證】法院은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證證할 수 있다.
〔(判例作成) 49-50-51(2), (公判期間日前 檢證) 273, (證據保全請求) 184, (檢證規定) 143, (準用規定) 110-119-123-127, (檢事과 檢證) 215-217 * 日刑訴 128]

第140條 【檢證이 必要한 處分】檢證을 함에는 身體의 檢查, 死體의 解剖, 墓碑의 發掘, 物件의 破壞,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搜查에 의 準用〕 219, (身體의 檢查) 141-142, (死體解剖) 20-159-161-163, (墳墓의 發掘) 160-162, (物件의 破壞) 20-365 * 日刑訴 129

第141條 【身體検査에 關한 指定】 ①身體의 檢査에 關하여는 檢査를 做하는 者의 性別, 年齡, 健康狀態, 其他事情을 考慮하여 그 사람의 健康과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이 아닌 身體의 檢査는 證跡의 存在를 驗証할 수 있는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③女子의 身體를 檢査하는 境遇에는 醫師나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④死體의 解剖 또는 墓碑의 發掘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注意하고 미리 遺族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檢) 24, (檢) 124, (成年) 44, (準用規定) 219
* 日刑訴 131, 日刑訴 101]

第142條 【身體検査와 召喚】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为하여 被告人아닌 者를法院其他指定한 장소에 召喚할 수 있다.

〔被告者の 召喚〕 68 * 日刑訴 132

第143條 【時刻의 制限】 ①日出前, 日沒後에는 家主, 看守者 또는 이에準하는 者의 承諾이 없으면 檢證을 하기 为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但 日出後에는 檢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例外로 한다.

〔(準用規定) 129 * 日刑訴 124]

第135條 【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 의通知】 前 3條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 被告者, 被告人는 緩護人에게 미리通知하여야 한다.

〔(准用規定) 132-134, (準用規定) 219
被告者에게 召見을 選付한 檢事을 주지 아니한
한 決定은 檢事이 被告者에게 選付하는 決定이다. (1980. 5. 20. 33)

第136條 【受命法官, 受託判事】 ①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判事에게 嘔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管轄區域內에 없는 때에는 그 目的의 所在地 地方法院判事에게 轉職할 수 있다.

〔(抗告) 416, (檢) 24, (準用) 145 * 日刑訴 125]

第144條 【檢證의 輔助】 檢證을 함에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197, 司法官吏 1-5 * 日刑訴 141]

第145條 【準用規定】 第110條, 第119條乃至第123條, 第127條과 第136

條의 決定은 檢證이 諸하여 準用된다.

〔(准用規定) 147-149, (過意料) 161, (日當과 請求權喪失) 168 * 日刑訴 122

第151條 【不出席과 過意料等】 ①召喚받은 證人이 正當한 事由 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 5만원 以下의 過意料에 處하고 出席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費用의 賠償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73. 1. 25)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47-149, (日當과 請求權喪失) 161-168 * 日刑訴 150

第152條 【召喚不應과 拘引】 正當한 事由 없이 召喚에 應하지 아니하는 證人은 拘引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25, (夜間執行制限) 例外 * 日刑訴 130

第153條 【準用規定】 第73條, 第74

條, 第76條의 決定은 證人의 召喚에準用된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25-127의 2]

第154條 【構内證人의 召喚】 證人이法院의 構내에 있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訊問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13-2

第155條 【準用規定】 第73條, 第75

條, 第77條, 第81條乃至第83條, 第85

條의 第1項과 第2項의 決定은 證人의 拘引에準用된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59, (宣誓方式) 157, (證書) 152-153 * 日刑訴 154

第157條 【宣誓의 方式】 ①宣誓은 訊問에 依하여야 한다.

②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陪審長은 證人으로 하여금宣誓書를朗讀하고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인이宣誓書를朗讀하지 못하거나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記者가 이를代行한다.

④宣誓은 起立하여 肩을 흔들어야 한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21-122 * 日刑訴 154

第147條 【公務上 秘密과 證人資格】 ①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그職務에關하여 알게된 事實에 關하여 本人 또는當該公務所가職務上秘密에屬한 事項임을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는 證人으로 訊問하지 못한다.

②그 所屬公務所 또는當該監督官公署는國家의重大한 利益을害하는 境遇에는除外하고는 承諾를拒否하지 못한다.

〔(公務員) 118, (證人資格) 146, (公務上秘密) 66 * 日刑訴 144

第148條 【近親者와 刑事責任과 證言, 拒否】 證人이對한 證言은 被告人 또는 緩護人이 證人에 參與하지 아니한 境遇에는法院에對하여必要한 事項의 訊問을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48-150-151-152, (證言拒否) 153-154 * 日刑訴 152

第158條 【宣誓할 證人에 对한 證告】 被告人 또는 緩護人이 證人에 參與하지 아니한 境遇에는法院에對하여必要한 事項의 訊問을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59-160 * 日刑訴 152

第159條 【宣誓無能力】 證人이 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는 때에는宣誓하게 하지 아니하고 訊問하여야 한다.

1. 16 歲未滿의 者
2. 宣誓의 意旨을理解하지 못하는 者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55-156 * 日刑訴 152-153, (證言拒否) 154-155 * 日刑訴 156-157 * 日刑訴 158-159 * 日刑訴 160-161 * 日刑訴 162

第160條 【證言拒否의 告知】 證人이 第148條, 第149條에該當하는 境遇에는裁判長은 證言에對하여必要한 事項을說明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57-158 * 日刑訴 147

第161條 【宣誓, 證言의拒否와 過意料】 ①證人이 正當한理由없이宣誓나 證言을拒否한 때에는 決定으로 5만원 以下의 過意料에 處할 수 있다. (改正 1973. 1. 25)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59-160 * 日刑訴 149

第162條 【刑事訴追를 認める 證人에 对한 證言의 拒否와 過意料】 被告人이 刑事事件에對하여 證言의 拒否를 認めた 證人은成立하지 아니한 것인 것이다. (1961. 7. 1. 42 94 * 日刑訴 194)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59-160 * 日刑訴 160

第161條의 2 【證人訊問의 方式】 ①證人은申請한 檢事, 緩護人 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檢事, 緩護人 또는 被告人이訊問한다.

②裁判長은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訊問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必要하다고認定하면前項의 訊問에 不拘하고 어느때나訊問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變更할 수 있다.

④法院이職權으로訊問할 證人이나犯罪로인한被害人이申請에의하여訊問할 證人의 訊問方式은裁判長이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1987. 1. 28)

⑤合議部員은裁判長에게告하고訊問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59-160 * 日刑訴 164

第168條 【證人의旅費, 日當, 宿泊料】 召喚받은 證人은 法律의規定한 바에 依하여旅費, 日當과宿泊料를請求할 수 있다. 但正當한 事由 없이宣誓 또는 證言을拒否한 證人에게는 訊問할 수 있다. (1955. 12. 13 428 * 日刑訴 299)

第172條의 2 【鑑定留置와拘束】 ①拘束中인被害人에對하여鑑定留置状이執行되었을 때에는被害人이留置되어 있는期間拘束은 그執行이停止된 것으로看做한다.

②前項의境遇에 前條第3項의留置분이取消되거나留置期間이滿된 때에는拘束의執行停止가取消된 것으로看做한다.

〔(本條新設) 1973. 1. 25〕

第173條 【鑑定의必要한 處分】 ①鑑定人은鑑定에關하여必要한 때에는法院의許可를 얻어他人의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갈 수 있고 身體의 檢查, 死體의解剖, 墓碑의發掘, 物件의破壞를 할 수 있다. (1978. 7. 25. 77-3513)

第170條 【宣誓】 ①鑑定人에게는鑑定前에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은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削除 (1961. 9. 1.)

第163條 【當事者の參與權, 訊問權】 ①檢事, 被告人 또는 緩護人은 證人에 參與할 수 있다.

②檢事, 被告人 또는 緩護人은 證人에 參與할 수 있다.

③檢事에 關하여 參與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通知하여야 한다. 但 參與하지 아니하는 意思를明示한 때에는例外로 한다.

④削除 (1961. 9. 1.)

第164條 【訊問의請求】 ①檢事, 被告人 또는 緩護人이 證人에 參與하지 아니한 境遇에는法院에對하여必要한 訊問을請求할 수 있다.

②檢事, 被告人 또는 緩護人이 證人을訊問한 境遇에는被告人에게豫期하지 아니한 不利益의證言이 謠述된 때에는 반드시 그陳述內容을被告人 또는 緩護人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必要한 때에는鑑定人에게說明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197, (準用規定) 148-150 * 日刑訴 151-152 * 日刑訴 153-154 * 日刑訴 155-156 * 日刑訴 157-158 * 日刑訴 159-160 * 日刑訴 161-162 * 日刑訴 163-164 * 日刑訴 165-166 * 日刑訴 167-168 * 日刑訴 169-170 * 日刑訴 171-172 * 日刑訴 173-174 * 日刑訴 175-176 * 日刑訴 177-178 * 日刑訴 179-180 * 日刑訴 181-182 * 日刑訴 183-184 * 日刑訴 185-186 * 日刑訴 187-188 * 日刑訴 189-190 * 日刑訴 191-192 * 日刑訴 193-194 * 日刑訴 195-196 * 日刑訴 197-198 * 日刑訴 199-200 * 日刑訴 201-202 * 日刑訴 203-204 * 日刑訴 205-206 * 日刑訴 207-208 * 日刑訴 209-210 * 日刑訴 211-212 * 日刑訴 213-214 * 日刑訴 215-216 * 日刑訴 217-218 * 日刑訴 219-220 * 日刑訴 221-222 * 日刑訴 223-224 * 日刑訴 225-226 * 日刑訴 227-228 * 日刑訴 229-230 * 日刑訴 231-232 * 日刑訴 233-234 * 日刑訴 235-236 * 日刑訴 237-238 * 日刑訴 239-240 * 日刑訴 241-242 * 日刑訴 243-244 * 日刑訴 245-246 * 日刑訴 247-248 * 日刑訴 249-250 * 日刑訴 251-252 * 日刑訴 253-254 * 日刑訴 255-256 * 日刑訴 257-258 * 日刑訴 259-260 * 日刑訴 261-262 * 日刑訴 263-264 * 日刑訴 265-266 * 日刑訴 267-268 * 日刑訴 269-270 * 日刑訴 271-272 * 日刑訴 273-274 * 日刑訴 275-276 * 日刑訴 277-278 * 日刑訴 279-280 * 日刑訴 281-282 * 日刑訴 283-284 * 日刑訴 285-286 * 日刑訴 287-288 * 日刑訴 289-290 * 日刑訴

②司法警察官이 犯罪搜查에 必要한 때에는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地方法院判事가 發付한 令狀에 依하여 押收·搜査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改正 1980. 12. 18.)

[國] 刑訴法108. [令狀主義] 120. [令狀] 113-114. [證據力] 312 * 日刑訴218
[國] 通達法上 押收回次에 의한 押收物이나 하더라도 그 形狀等에 관한 證據價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證據能力이 있다. 할 것이다. (1968. 9. 17. 68.2.23)

第216條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強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1條, 第206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拘束하는 境遇 또는 現行犯人을 捕捕하는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 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서의 被疑者搜查

2. 遠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대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犯行中 또는 犯行直後의 犯罪場所에서 緊急을 要하여 法院判事의 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令狀 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이境遇에는 事後에 遠捕 없이 令狀을 받어야 한다. (改正 1961. 9. 1.)

[國] 要急處分] 220. [〔被疑者拘束〕 201. [被疑者監禁] 206. [現行犯人逮捕] 211-212. [拘束令狀執行] 81-83-85. [拘束令狀發行를 받지 못한 경우] 207. [時刻制限] 125-126-143-219 * 日刑訴220

[國] 司法警察官이 行한 認證이 事件發生地에 証據을 要하여 判事의 令狀 없이 進行된 것이라면, 이는 刑事訴訟法 第216條 第3項에 依한 認證이 아닐 것임에도 不拘하고 記述상 令狀을 받은 意思이 없다면, 이러한 檢證은 有効의 證據로 할 수 있다. (1984. 3. 13. 83.3.306)

第217條 【同前】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6條의 規定에 依하여 拘束할 수 있는 被告의 所有,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07條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令狀 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②前條第1項第2號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押收한 物件는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지 못한 때에는 即時 還付하여야 한다. 但 押收를繼續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押收, 搜索令狀의 發付를 받아야 한다.

[國] 刑訴法106-108. 例48(1). [押收能力] 司法警察規則50. [令狀] 219-214. [準用] 417

第218條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를 令狀 없이 押收할 수 있다.

[國] 司法警察官은 所有者가 任意로 提出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物件를 令狀 없이 押收할 수 있다. (1969. 8. 30. 69.46)

第219條 【準用規定】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乃至第112條, 第114條, 第115條 第1項本文, 第2項, 第118條乃至第135條,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 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司法警察官이 第132條乃至第134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有하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80. 12. 18.)

[國] 檢查機關이 押收物을 第3者에게 保留하게 하는 境遇에 有하는 限, 檢查機關에게 保管料支給義務가 없다 할 것이다. (1968. 4. 16. 68.2.28. 5)

第220條 【要急處分】 第216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는 境遇에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第123條第2項, 第125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要하지 아니한다.

第221條 【第三者의 出席要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檢查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 아닌 被告의 出席을 要求하여 陳述을 들을 수 있고 還定, 通譯 또는 翻譯을 委嘱할 수 있다. (改正 1961. 9. 1.)

[國] 被疑者의 出席要求] 200. [〔證人訊問〕 146-148. [〔證人〕 180-183. [〔證物〕 245. [〔被疑者〕 169. 例. [〔通譯·翻譯〕 245-246. [〔證據〕 24-5-9 * 日刑訴223]

第216條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強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1條, 第206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拘束하는 境遇 또는 現行犯人을 捕捕하는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 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但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할 수 있다. (1961. 9. 1.)

[國]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할 수 있다. (1961. 9. 1.)

[國]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할 수 있다. (1961. 9. 1.)

第221條 【證人訊問의 請求】 ①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할 수 있다. 但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할 수 있다. (1961. 9. 1.)

[國]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할 수 있다. (1961. 9. 1.)

第221條 【告訴權者】 犯罪로 因한 被害者는 告訴할 수 있다.

[國] [告訴의 制度] 224. [〔被害者인 告訴權者〕 225-227. [〔告訴期間〕 230. [〔告訴取消〕 232. [〔告訴의 方式〕 237-238. [〔報告〕 237-238. [〔代理告訴〕 236 * 日刑訴230]

第221條 【告訴權者】 犯罪로 因한 被害者는 告訴할 수 있다.

[國] [告訴의 制度] 224. [〔被害者인 告訴權者〕 225-227. [〔告訴期間〕 230. [〔告訴取消〕 232. [〔告訴의 方式〕 237-238. [〔報告〕 237-238. [〔代理告訴〕 236 * 日刑訴230]

第221條 【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國] [〔告訴權者指定〕 228. [〔共犯〕 223. [〔告訴의 方式〕 235]

第225條 【非被害者인 告訴權者】 ①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②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弟兄姊妹는 告訴할 수 있다.

③檢事는 證人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④檢事는 檢查에 支隊이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農護人을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에 參與하게 할 수 있다.

⑤檢事는 檢查에 支隊이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農護人을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에 參與하게 할 수 있다.

⑥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⑦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⑧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⑨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⑩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⑪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⑫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⑬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⑭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⑮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⑯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⑰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⑱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⑲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⑳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㉑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㉒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㉓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㉔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㉕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㉖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㉗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㉘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㉙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㉚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㉛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㉜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㉝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㉞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遠捕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㉟檢事는 第1項 또는 第2

〔時效期間〕249. [共犯]253②. 刑30이하 ※ 日刑
新253

〔反國家團體加入罪는 그加入行爲 완료로써 끝나고 그 범부의 公訴時效가進行한다. (1961. 10. 12. 4294刑上344. 門首1961. 10. 5. 4294刑上208)

第253條 【時效의停止와效力】 ① 時效는 公訴의 提起로進行이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確定된 때로부터 进行한다.

②共犯의 1人에對한 前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對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確定된 때로부터進行한다. (改正 1961. 9. 1.)

〔公訴의 提起〕254-246. [公訴棄却]327-328-363-382. [公訴時效]262之2. [共犯]30-34 ※ 日刑
新254

第254條 【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公訴을 提起함에는 公訴狀을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狀에는 被告人數에相應한 副本을添附하여야 한다.

③公訴狀에는 다음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1.被告人的姓名 other被告人을特定할 수 있는事項

2.罪名

3.公訴事實

4.適用法條

④公訴事實의記載는 犯罪의時日, 場所와方法을明示하여事實을特定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⑤數個의犯罪事實과適用法條을豫備的 또는擇一으로記載할 수 있다.

〔刑訴規117. [公訴提起]246. [提起時效無效]※日刑
新327. [適用法條]298-323. [公訴狀의 뼈본]266. 訴訟從21※日刑訴256〕

〔①被告의 收賄行爲가同一한 相對方과의 사이에서同一한 犯罪에依하여 證據되고 또 被告法條도同一다면 이를包括하고 보아야 한다. (1981. 3. 24. 80-2832)〕

②公訴事實의特定은 그一起사소不明確하게 指示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각각에 指示된各項事實에依하여 그公訴事實을特定할 수 있는 한限 그公訴提起의效力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1987. 1. 20. 86-2260)

第255條 【公訴의取消】 ①公訴는 第1審判決의宣告前까지取消할 수 있다.

②公訴取消는理由를記載한書面으로하여야 한다. 但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起訴便宜主義〕247. [公訴取消의 特定]328①. [再起訴]329. [告訴人에게通知]258 ※ 日刑
訴257

〔公訴狀에기재된수개의公訴事實이 서로同一性이 있고 實體의 聯合關係에 있는 경우에 그일부를訴訟對象에서除外하여公訴棄却의방식에의한것이 아니라公訴의一部取消節次에의하여야 한다. (1986. 9. 23. 86-1487)〕

第256條 【(他管送致)檢事은事件이 그所屬檢察廳에對應한法院의管轄에屬하지 아니한 때에는事件을書類와證據物과 함께管轄法院에對應한檢察廳檢事에게送致하여야 한다.

〔法院의 賞罰14이하. 法規25-29. (送致의通知)258. [特例]少年45 ※ 日刑訴258〕

第256條의2【事件의軍檢察官送致】檢事은事件이軍事法院의裁判權에屬하는 때에는事件을書類와證據物과 함께裁判權을가진管轄軍事法院檢察官에게送致하여야 한다. 이경우에送致前에 行한訴訟行為는送致後에도 그效力에影響이 없다. (改正 1973. 1. 25. 改正 1987. 11. 28.)

〔軍事法院의管轄〕250-100. 軍法判決. [軍法會議의 評議]軍法2-3. 軍法16-18. (送致)256

第257條 【告訴等에依한事件의處理】檢事이告訴 또는告發에依하여 犯罪를搜查할 때에는告訴 또는告發을受理한 날로부터 3月以内에搜查를完了하여公訴提起與否를決定하여야 한다.

〔告訴·告發〕237-238. [期間計算]66. [起訴與否]247

第258條 【告訴人等에의處分告知】 ①檢事는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거나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 公訴의取消王는 第256條의送致를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書面으로告訴 또는告發人에게通知하여야 한다.

②檢事는不起訴 또는 第256條의處分을 한 때에는被告人에게即时 그處분을通知하여야 한다.

③檢事을地方法院의審判에付하는決定의裁判書에는公訴狀의記載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第2號의決定을 한 때에는 그記錄에裁定决定의裁判書의正本을添附하여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⑤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⑥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⑦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⑧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⑨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⑩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⑪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⑫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⑬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⑭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⑮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⑯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⑰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⑱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⑲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⑳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⑷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⑵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⑶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⑷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⑸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⑹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⑺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⑻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⑼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事件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⑽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⑾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⑿檢事은告訴 또는告發있는event에關하여公訴를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을 한 때에는 그處분한 날로부터 7일내에管轄地方法院 또는支廳에送致하여야 한다.

■ [上告理由書] 379, [上告事由] 383 ※ 日刑訴 414-392
■ 上告事由 被告對象은 原審判決當時를 基準으로 하여 그 当事者를 原審하는 때에는 것이다. (1969. 12. 9 69-1730)

第385條 削除<1961. 9. 1>

第386條 【辯護人の資格】 上告審에는 辯護士 아닌 者를 辩護人으로 選任하지 못한다.

■ [辯護人] 31-32, [辯護士] 3-6 ※ 日刑訴 387
第387條 【辯論能力】 上告審에는 辨護人이 아니면 被告人을 爲하여 辨論하지 못한다.

■ [辨護人] 386 ※ 日刑訴 388

第388條 【辯論方式】 檢事와 辨護人은 上告理由書에 依하여 辨論하여야 한다.

■ [上告理由書] 379, [辯護] 302-303 ※ 日刑訴 389
第389條 【辯護人の不出席等】 ① 辨護人の 選任이 없거나 辨護人이 公判期日に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의 陳述을 듣고 判決을 할 수 있다. 但 第283條의 规定에 該當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違法한 理由書의 提出이 있는 때에는 그 陳述이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 [辯護人選任] 30-32 ①-386, [必要的辯護] 282, [檢事敘述] 302-278, [例外規定] 283-33-282 ※ 日刑訴 391

第390條 【書面審理에 依한 判決】 上告事由는 上告狀, 上告理由書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辨論 없이 判決할 수 있다. (改正 1961. 9. 1)
■ [上告理由書] 379, [辯護] 387-388-282 ※ 日刑訴 408

第391條 【原審判決의 破棄】 上告理由가 있는 때에는 判決로써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 [上告理由] 383-385, [破棄] 392-397 ※ 日刑訴 410

■ 破棄 대상은 法院은 그 資格으로 한 事實上 및 法律上의 判断은 確定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判斷한 判決에 대하여 다시 上告을 한 경우에, 그 上告事由를 通報하는 上告法院도 앞서의 破棄理由로 한 判断에 難處되므로 이를 複合할 수 있다. (1986. 6. 10 65-1996)

第392條 【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 被告人の 利益을 위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 破棄의 理由가 上告한 共同被告人에 共通되는 때에는 그 共同被告人에 對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 [原審判決의 破棄] 391, [關係事件] 11 ※ 日刑訴 414-401

■ 必要의 共犯關係에 있는 犯人中 1人이 이미 告訴를 提出한 때에는 그 關係에 關한 判決은 그에 대한 判決로써 破棄된다. 但 이 法律에 特別한 规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公訴事件] 327-328-363, [審判範圍] 384, [遞送] 366

第394條 【管轄認定과 移送의 判決】 管轄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遷送하여야 한다.
■ [管轄] 1-16, 法律 25-29, [審判範圍] 384, [抗告事由] 367 ※ 日刑訴 412

第395條 【管轄違反과 遷送의 判決】 管轄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을 破棄하는 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遷送하여야 한다.
■ [管轄违反] 319, [递送] 366, [抗告事由] 367

第396條 【破棄自判】 ① 上告法院은 原審判決을 破棄한 境遇에 그 訴訟記錄과 原審法院과 第1審法院이 調査한 證據에 依하여 判決하기充分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被告事件에 對하여 直接判決을 할 수 있다. (改正 1963. 12. 13.)
② 第368條의 规定은 前項의 判決에 較用한다.

■ [破棄] 391, [不利益變更의 제정] 368 ※ 日刑訴 413-414-402

■ 未成年被告에 대하여 不定期刑을宣告하면서 少年法 第54條 通用하지 아니하였음은 違法이다. (1970. 11. 24 70-2103)

第397條 【還送 또는 移送】 前 4 條의 境遇에 原審判決을 破棄한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 그와同等한 다른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 [原審判決의 破棄] 391, [還送判決] 393-395, [移送判決] 394 ※ 日刑訴 413

第398條 【裁判書의 記載方式】 裁判書에는 上告의 理由에 關한 判決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1961. 9. 1)

■ [上告理由] 383

第399條 【準用規定】 前章의 规定은 本章에 特別한 规定이 없으면 上告의 審判에 準用한다.
■ [抗告審에 準用] 370 ※ 日刑訴 414

第400條 【判決訂正의 申請】 ① 上告法院은 그 判決의 内容에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聽權 또는 檢事, 上告人이나 辨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判決로써 訂正할 수 있다. (改正 1961. 9. 1.)
② 前項의 申請은 判決의 宣告가 있는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申請은 申請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原審法院] 法組 17-25, [抗告의 遷次] 406, [抗告權] 404-405-354, [抗告法院의 抗告權] 407-408

第407條 【原審法院의 抗告棄却決定】 ① 抗告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告權消滅後인 것이明白한 때에는 原審法院은 抗告를棄却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申請은 判決의 宣告가 있는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申請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 [原審法院] 法組 17-25, [抗告의 遷次] 406, [抗告權] 404-405-354, [抗告法院의 抗告權] 407-408

第408條 【原審法院의 更新決定】 ① 原審法院은 抗告가理由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判決을 更正하여야 한다.
② 抗告의 全部 또는一部가理由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抗告狀을 받은 날로부터 3日 이내에 意見書를添附하여 判決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 [原審法院] 法組 17-25, [抗告의 遷次] 406, [抗告法院] 法組 17-25-4, [期間計算] 66, [抗告法院] 法組 17-25 ※ 日刑訴 423

第409條 【普通抗告와 執行停止】 抗告는 即時抗告外에는 裁判의 執行을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原審法院 또는 判告法院은 判告에 對한決定이 있을 때까지 執行을停止할 수 있다.

■ [判決訂正] 400, [破棄] 302-303, [判決] 371-388 ※ 日刑訴 416

第4章 抗告

第402條 【抗告할 수 있는 裁判】 法院의決定에 對하여不服이 있으면 抗告를 할 수 있다. 但 이 法律에 特別한 规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抗告可否와 遷送의 判決] 37-39, [抗告提起期間] 404-405, [特別規定] 403-415 ※ 日刑訴 419

■ 刑事訴訟事件에 關한 法院의 少年法 遷送致決定은 刑事訴訟法 第403條과 規定하는 判決前의 訴訟 遷送에 關한決定에 該當하는 것이 아니라. 이决定에 대하여不服이 있을 때에는 같은 法 第402條에 依한 抗告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6. 7. 25 86-9)

第403條 【判決前의 判決에 對한抗告】 ① 法院의 管轄 또는 判決前의 訴訟節次에 關한決定에 對하여는 特히 即時抗告를 할 수 있는 境遇에는 抗告를 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③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④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⑤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⑥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⑦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⑧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⑨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⑩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⑪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⑫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⑬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⑭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⑮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⑯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⑰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⑱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⑲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⑳ 前項의 规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遷付에 關한決定 또는 遷定하기에

第432條 【再審에 대한 결정과當事者の意見】 재판의請求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請求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宣告를 받은 자의法定代理人이請求한 경우에는有罪의宣告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433條 【請求棄却决定】 재판의請求가 法律上의 方式에違反하거나請求권의消滅후인 것이明白한 때에는決定으로棄却하여야 한다.

第434條 【同前】 ① 재판의請求가理由로 인해確定한 때에는決定으로棄却하여야 한다.

② 재판의决定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同一한理由로써 다시 재판을請求하지 못한다.

第435條 【再審開始의决定】 ① 재판의請求가理由로 인해確定한 때에는再審開始의决定을하여야 한다.

② 재판开始의决定을 할 때에는決定으로刑의執行를停止하여야 한다.

第436條 【請求의競合과請求棄却의決定】 ① 抗訴棄却의確定判決과 그判決에 대하여確定된 第1審判決에 대하여再審의請求가 있는境遇에 第1審法院이 재판의判決을 할 때에는抗訴法院은決定으로再審의請求를棄却하여야 한다.

② 第1審 또는 第2審判決에 대하여上告棄却의判決과 그判決에 대하여確定된 第1審判決에 대하여再審의請求가 있는境遇에 第1審法院 또는抗訴法院이 재판의判決을 할 때에는上告法院은決定으로再審의請求를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3. 12. 13.)

第437條 【即時抗告】 第433條, 第434條第1項, 第435條第1項과前條第1項의决定에 대하여는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438條 【再審의審判】 ① 재판开始의决定이確定한事件에 대하여는 第436條의境遇에in the法院은 그審級에 따라다시審判을하여야 한다.

② 다음境遇에는 第306條第1項, 第328條第1項과第2項의規定은前項의審判에適用하지 아니한다.

1. 死亡者 또는回復할수 없는 心神障碍者를 위하여再審의請求가 있는 때
2. 有罪의宣告를 받은 자가再審의判決에死亡하거나回復할수 없는 心神障碍者로 된 때
3. 前項의境遇에는被告인이出廷하지 아니하여도審判을 할 수 있다. 단, 傷護인이出廷하지 아니하면開廷하지 못한 때

第439條 【略式命令의禁止】 재판의請求가는原判의刑보다重한刑을宣告하지 못한다.

第440條 【無罪判決의公示】 재판에서無罪의宣告를 한 때에는 그判決을官報와法院所在地의新聞紙에記載하여公告하여야 한다.

第441條 【非常上告理由】 檢察總長은判決이確定한 후 그事件의審判이法令에违反한 것을發見한 때에는大法院에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第442條 【非常上告의方式】 非常上告를 할 때에는 그理由를記載한申請書를大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443條 【公判期日】 公判期日에는檢事는申請書에依하여陳述하여야 한다.

第444條 【調查의範圍,事實의調査】 ① 大法院은申請書에包含된理由에 限하여調査하여야 한다.

②法院의管轄, 公訴의受理와訴訟節次에 關하여는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

③ 前項의境遇에는 第431條의規定을準用한다.

第445條 【棄却의判決】 非常上告가理由로 인해確定한 때에는判決로써 이를棄却하여야 한다.

第446條 【被棄의判決】 非常上告가理由로 인해確定한 때에는 다음의區別에 따라判決을하여야 한다.

1. 原判의刑에违反한 때에는 그違反된部分을破棄하여야 한다. 단, 原判이被告人에게 不利益한 때에는原判을破棄하고被告事件에對하여 다시判決을 한다.
2. 原審訴訟節次가法令에违反한 때에는 그违反된節次를破棄한다.

第447條 【判決의效力】 非常上告의

判決은前條第1號但行의規定에 依한判決外에는 그效力이被告人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第448條 【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事件】 ① 地方法院은 그管轄에 屬한事件에 대하여檢事의請求가 있는 때에는 公判節次없이略式命令으로被告人을罰金, 科料 또는沒收에 處할 수 있다.

② 前項의境遇에는追徵其他附隨의處分을 할 수 있다.

第449條 【略式命令의請求】略式命令의請求는 公訴의提起와 同時に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第450條 【普通의審判】略式命令의請求가 있는境遇에 그事件이略式命令으로 할 수거나略式命令으로 하는것이適當하지 아니하다고确定한 때에는公判節次에 依하여審判하여야 한다.

第451條 【略式命令의方式】略式命令의方式에는 記載된 被告人의 住所地로略式命令書를送達하거나受取人不明 등으로送達이不可能하였다 하더라도, 在記錄에 記載된被告人에 對한被告者訊問場所에被告人의 事務所나 나나 있다면, 法院으로서는 그事務所에 다시訴訟首領을送達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바로公示送達의 方法을 取한 것은公示送達의要件이 아닐 것이다. 그로 인하여被告人이正式裁判請求期間을 超過하게 되었다면 이는被告人이 責任할 수 없는 事由에該當한다. (1986. 2. 27 85.6. 6)

第452條 【略式命令의告知】略式命令의告知는檢事와被告人에對한裁判의送達에 依하여야 한다.

第453條 【正式裁判의請求】 ① 檢事 또는被告人은略式命令의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内에正式裁判의請求를 할 수 있음을明示하여야 한다.

第454條 【正式裁判의告知】 ① 檢事 또는被告人은略式命令의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内에正式裁判의請求를 할 수 있음을明示하여야 한다.

第455條 【正式裁判의決定】 ① 正式裁判의請求가法令上의方式에违反한 때에는 그违反된部分을破棄하여야 한다. 단, 原判이被告人에게 不利益한 때에는原判을破棄하고被告事件에對하여 다시判決을 한다.

② 原判의刑에违反한 때에는 그违反된部分을破棄하여야 한다.

③ 正式裁判의請求가法令上의方式에违反한 때에는 그违反된部分을破棄하여야 한다.

④ 原判의刑에违反한 때에는 그违反된部分을破棄하여야 한다.

第456條 【略式命令의失效】略式命令은正式裁判의請求에依한判決이 있는 때에는 그效力를 잃는다.

第457條 【略式命令의效力】略式命令은正式裁判의請求期間이經過하거나 그請求의取下 또는請求棄却의決定이確定한 때에는 그效力를 잃는다.

第458條 【公訴規定의準用】 第340條乃至第342條, 第345條乃至第352條, 第354條의規定은正式裁判의請求 또는取下에準用한다.

第459條 【裁判의確定과執行】裁判은이法律에 特別한規定이 없으면確定한 後에執行한다.

第460條 【執行指揮】 ①裁判의執行은 그宣告로서確定되는 것과刑訴法 제400條의判決訂正申請期間을기다릴 필요가 없다. (1967. 6. 2 67.22.)

②前項의規定에 依하여刑의執行를停止한境遇에는心神障碍의回復 또는出產後法務部長官의命令에 依하여刑을執行한다.

第461條 【執行指揮의方式】裁判의執行는裁判書 또는裁判을記載한調書의 謄本 또는抄本을添附한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단, 刑의執行를指揮하는境遇外에는裁判書의原本, 謄本이나抄本 또는調書의 謄本이나抄本에認定하는捺印으로 할 수 있다.

第462條 【刑執行의順序】 2以上의刑의執行은首先喪失, 資格停止, 判金, 科料와 没收外에는 그重한刑을 먼저執行한다. 단, 檢事는所屬長官의許可를需要하여重한刑의執行를停止하고 다른刑의執行를 할 수 있다.

第463條 【死刑의執行】死刑은法務部長官의命令에 依하여執行한다.

第464條 【死刑判決確定과訴訟記錄의提出】死刑을宣告한判決이確定한 때에는檢事는遲滯없이訴訟記錄을法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465條 【死刑執行命令의時期】 ①死刑執行의命令은判決이確定된 날로부터 6月以内에 하여야 한다.

②上訴權回復의請求, 재판의請求 또는非常上告의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節次가終了한 때까지의期間은前項의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466條 【死刑執行의期間】法務部長官이死刑의執行를命한 때에는 5日内에執行하여야 한다.

第467條 【死刑執行의參與】 ①死刑의執行에는檢事, 檢察廳檢事官과矯導所長은拘置所長이나 그代理者가參與하여야 한다.

②檢事 또는矯導所長 또는拘置所長의許可가 없으면 누구든지刑의執行場所에 들어가지 못한다. (改正 1963. 12. 13.)

第468條 【死刑執行調書】死刑의執行에參與한檢察廳檢事官은執行調書를作成하고檢事와矯導所長 또는拘置所長이나 그代理者와 함께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69條 【死刑執行의停止】 ①死刑의宣告를 받은者が心神의障碍로意思能力이없는状態에있거나孕胎中에있는女子인 때에는法務部長官의命令으로執行를停止한다.

②前項의規定에 依하여刑의execution을停止한境遇에는心神障碍의回復 또는出產後法務部長官의命令에 依하여刑을执行한다.

第470條 【自由刑의停止】 ①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が心神의障碍로意思能力이없는状態에있거나刑을宣告한法院에對應한檢察廳檢事가指揮한다. 但,訴訟記錄이下級法院 또는그法院에對應한檢察廳에있는 때에는 그檢察廳檢事가指揮한다.

第471條 【資格刑의執行】 資格喪失 또는资格停止의宣告를 받은者에對하여는 이를受刑者原籍에記載하고遲滯없이그謄本을刑의宣告를 받은者的本籍地와居住地의市, 邑, 面長에게送付하여야 한다.

第472條 【訴訟費用의執行停止】 第487條에規定된申請期間내에 그申請이 있는 때에는訴訟費用負擔의裁判의執行는 그申請에對한裁判이確定될 때까지停止된다.

第473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②召喚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의執行狀을發付하여拘引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境遇에刑의宣告를 받은者が逃亡하거나逃亡할念慮가 있는 때 또는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召喚함이 없이刑의執行狀을發付하여拘引할 수 있다.

第474條 【刑執行의方式과效力】 ①前條의刑의執行狀에는刑의宣告를 받은者的姓名·住居·年齡·刑名·刑期其他必要한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②刑의執行狀은拘束令狀과同一한效力이 있다. (全改 1973. 1. 25.)

第475條 【刑執行狀의執行】 前2條의規定에依한刑의執行狀의執行에는第1編 第9章被告人の拘束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改正 1973. 1. 25.)

第476條 【資格刑의執行】 資格喪失 또는资格停止의宣告를 받은者에對하여는 이를受刑者原籍에記載하고遲滯없이그謄本을刑의宣告를 받은者的本籍地와居住地의市, 邑, 面長에게送付하여야 한다.

第477條 【財產刑等의執行】 ①罰金, 科料, 没收, 追徵, 遺失料, 訴訟費用, 費用賠償 또는假納의裁判은檢事의命令에 依하여執行한다.

②前項의命令은執行力있는債務名義와同一한效力이 있다.

③第1項의裁判의執行에는民事訴訟法의執行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但,執行前에裁判의送達을要하지 아니한다.

第478條 【同前】 ①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에對하여 다음各號의 1에該當한事由가 있는 때에는刑을宣告한法院에對應한檢察廳檢事 또는刑의宣告를 받은者的現在地를管轄하는檢察廳檢事의指揮에 依하여刑의執行를停止할 수 있다.

第479條 【執行停止와時效】 刑79 * 日刑訴479

第480條 【刑의執行으로因하여顧著히健康을害하거나生命을保全할 수 없을念慮가 있는 때】 2. 年齢 70歲以上인 때

3. 孕胎後 6月以上인 때

4. 出產後 60일을經過하지 아니한 때

5. 直系尊屬이年齢 70歲以上 또는重病이나不具者로保護할 다른親族이없는 때

6. 直系卑屬이幼年으로保護할 다른親族이없는 때

7. 其他重大한事由가 있는 때

第481條 【檢事가前項의指揮를함에所屬檢察廳檢事장의許可를얻어야 한다】 (執行停止와時效) 刑79, (檢者등) 行刑29·30 * 日刑訴482

第482條 【訴訟費用의執行停止】 第487條에規定된申請期間내에 그申請이 있는 때에는訴訟費用負擔의裁判의執行는 그申請에對한裁判이確定될 때까지停止된다.

第483條 【訴訟費用負擔의廃止】 刑186·194, (執行) 477, (免除의申請) 487 * 日刑訴483

第484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85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86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87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88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89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0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1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2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3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4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5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6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7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8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499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0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1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2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3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4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5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6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7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8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09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0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1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2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3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4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5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6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7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8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19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0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1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2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3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4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5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6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7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8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29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0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1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2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3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4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5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6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7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8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39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40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41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42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43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44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45條 【執行하기 위한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拘留의宣告를 받은者가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檢事는刑을執行하기 위한 이를召喚하여야 한다.

第546條 【執行

體質, 健康, 年齢과 作業 等을 參酌하여 必要한 食糧을 給與한다.
 ②食糧 給與의 基準은 法務部令으로 定한다.
 第 22 條 【衣類等의 自辨】 ①受刑者에게는 必要한 境遇에 衣類, 寢具와 食糧의 自辨을 許可할 수 있다.
 ②自辨의 衣類, 寢具와 食糧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1980. 12. 22)

第 6 章 衛生과 醫療

第 23 條 【頭髮과 髮鬚】 受刑者の 頭髮과 髮鬚은 短削한다. 但女子受刑者와 3月 以下의 刑을 받은 者와 残刑期가 2月 以下인 者에 對하여는例外로 한다.

第 24 條 【運動】 所長은 受刑者에게 健康에 必要한 運動을 하게 하여야 한다.

第 25 條 【傳染病預防】 所長은 受刑者에게 傳染病預防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 26 條 【病室收容】 所長은 疾病에 걸린 受刑者에 對하여 病室收容 其他適當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

第 27 條 【隔離收容】 所長은 傳染病에 걸린 受刑者에 對하여 다른 收容者와 隔離收容하여야 한다.

第 28 條 【自費治療】 受刑者が 自費로 补助治療를 請하는 때에는 必要에 依하여 當該所長은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 29 條 【病院收容】 ①所內에서 受刑者에게 適當한 治療를 하는 것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當該所長은 所外의 다른 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②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移送된 者는 收容者에 準한다.

第 30 條 【妊娠等】 妊娠, 產婦와 老婆者는 瘋病者에 準한다.

第 7 章 教育과 敎誨

第 31 條 【敎誨】 ①削除 (1980. 12. 22)

②受刑者が 그가 信奉하고 있는 宗派의 敎義에 依한 特別敎誨를 諸願할 때에는 當該所長은 그 宗派에 委嘱하여 敎誨를 할 수 있다.

第 32 條 【敎育】 ①無敎育者 또는 少年受刑者에 對하여는 年齡, 知識程度其他事情을 參酌하여 그에 適應한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但身心弱者 또는 老婆者에 對하여는例外로 한다.
 ②所長은 受刑者の 人格陶冶과 改過遷善을 促進시키고 心身鍛鍊과 技術習得을 위하여 필요한敎育訓練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1980. 12. 22)

第 33 條 【敎育規程】 受刑者が 圖書의 閱讀을 請하는 때에는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事由가 없는 限 當該所長은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第 34 條 【敎育規程】 敎育의 科目, 時間과 圖書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第 8 章 作業

第 35 條 【作業】 作業은 受刑者の 年齡, 刑期, 健康, 技術, 性格, 趣味, 職業과 將來의 生計 其他事情을 參酌하여 課한다.

第 36 條 【休日의 作業】 ①國家慶祝日, 日曜日 其他 公休日에는 作業을 課하지 아니한다. 但炊事, 清掃, 看護, 經理其他 特히 必要한 作業은例外로 한다.

②作業時間과 臨時作業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第 37 條 【作業의 免除】 受刑者中父母, 妻子 또는 弟兄의 許可를 받은 者는 2日間, 父母 또는 妻의 死日은 1日間作業을 免除한다.

(改正 1980. 12. 22)

第 38 條 【申請에 依한 作業】 禁錮와 拘留刑을 받은 者에게는 申請에 依하여 作業을 課할 수 있다.

第 39 條 【作業收入等】 ①作業收入은 國庫收入으로 한다.

②受刑者에게는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作業의 種類, 成績과 行狀 其他事情을 參酌하여 作業賞與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③第 2項의 作業賞與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支給한다. 但 本人의 家族生活扶助 또는 教化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釋放前이라도 그 一部 또는 全部를 支給할 수 있다.

第 40 條 【慰勞金, 吊慰金】 ①受刑者が 就業中 負傷을 當하거나 事故로 因하여 死亡 또는 不具者가 되면에는 그 情狀을 參酌하여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慰勞金 또는 吊慰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慰勞金은 釋放할 때 本人에게, 吊慰金은 그 相親人에게 각각 支給한다.

第 9 章 領置

第 41 條 【攜帶金品의 領置】 ①受刑者の 携帶金品은 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에 領置한다. 但 領置의 價値가 없는 것은例外로 한다.

②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携帶하는 物品을 本人이相當한 期間內에 處分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優先할 수 있다. (改正 1980. 12. 22)

第 42 條 【受刑者에 對한 金品交付】 ①受刑者에게 金品의 交付를 請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事由가 없는 限 當該所長은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②所長은 受刑者에게 送付된 金品으로서 本人이 受領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物品을 本人에게 交付함이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이를 그 送付人에게 送付한다.

③所長은 第 2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 送付人 또는 그 送付人的 住所가 不明한 境遇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한 後 6月이 경과하여도 交付를 請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그 金品은 國庫에 踏屬된다. 但 價値가 없다고 認定되는 物品은 優先할 수 있다.

第 43 條 【領置金品의 送付】 ①領置金品은 釋放할 때에는 本人에게 送付한다.

②死亡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相親人에게 交付한다. 但 死亡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③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④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⑤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⑥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⑦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⑧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⑨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⑩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⑪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⑫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⑬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⑭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⑮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⑯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⑰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⑱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⑲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⑳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㉑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㉒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㉓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㉔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㉕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㉖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㉗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㉘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㉙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㉚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㉛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㉜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㉝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㉞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隸屬이나 附屬에게 交付한다. 但 逃走後 1年을 超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踏屬된다.

㉟逃走者的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

교도관리는 이를 개피하지 못한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第5條【巡閱官에의 請願】 ①수형자는 순열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서 청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청원이 있는 때에는 순열관은 그요지를 청원부에 거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순열관에게 청원할 것을 예고하는 수형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6條【巡閱官의 口述請願의 離取】 순열관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리를 참여시키지 못한다.

第7條【巡閱官의 聽取】 ①순열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순열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第8條【請願書의 處理】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하며 그결정에서는 당해 소장이 자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第9條【所長의 面會】 ①소장은 매주 1회 이상의 면접일을 정하고 수형자의 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형자를 면접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면접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접을 하여야 하며 면접인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접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2章 收容

第10條【新入者の 引受】 ①소장은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 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리가 서명날인한 인수서를 그 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11條【刑의 執行節次】 ①미결수용자로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판례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로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 서류를 관계교도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12條【乳兒帶同】 ①소장은 신입의 여자에게 자녀의 대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자녀의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자녀를 당해 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동을 허가한 자녀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대동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자녀의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9. 8. 29)

第13條【新入者の 診斷】 교도소등

에 소속된 의무관은 신입자에 대하여 자체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第14條【傳染病의 定義】 법 제9조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법정전염병을 말한다.

第15條【傳染病患者의 收容】 소장은 교도소등에 전염병 이병자를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사 기타 전염병자를 수용할 적당한 설비에 격리하여야 한다.

第16條【傳染病患者의 收容】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이 병자의 입소를 거절한 때에는 자체없이 그 사유를 입소를 거절한 기관과 당해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29)

第17條【刑의 執行停止의 節次】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를 입소시킨 후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자체없이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수형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第18條【沐浴】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없이 목욕을 시켜야 한다.

②여자 신입자의 목욕에 대한 참여와 그의 신체 및 의류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리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여자인 수형자의 목욕과 신체 및 의류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第19條【新入者の 番號】 소장은 신입자의 번호를 지정하고 재소중 그번호표를 상의 왼쪽 옷깃 또는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약간에 독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第20條【遵守事項의 告知】 ①소장은 수형자의 준수사항 및 형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입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경찰서 기타의 공무소 또는 본인의 연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자체없이 그에 대한 회보를 하여야 한다.

第21條【新入者の 獨居收容】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로부터 3일은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수용된 자에게 대하여는 문서 및 도서의 열독을 금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신입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第22條【入所者の 身分帳 등】 ①입소자의 신분장부·수형자명부·민기력부는 수용후 3일내에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재소자의 준수사항을 그의 거실내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第23條【獨居收容의 規律】 독거수

용자는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을 금하며 소환·운동·일욕·접견·교회·진찰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第24條【獨居收容 등】 수형자는 다른 법령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독거수용한다. (개정 1979. 8. 29)

1. 형기가 3월미만 자

2. 23세미만의 자

3. 초범자

4. 입소후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第25條【同 前】 소장은 재소자의 신체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를 독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9. 8. 29)

第26條【同 前】 ①독거수용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독거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이상 독거수용시키지 못한다.

第27條【同 前】 소장 및 교도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 독거수용자를 순시하여야 한다.

第28條【同 前】 ①소장·보안과장·당직교감과 교위 및 교도소등 소속의 무관·교회관·교회사 및 여자교도관리를 제외한 교도관리는 단독으로 독거수용한 여자를 순시하지 못한다. (개정 1979. 8. 29)

②독거수용한 재소자를 순시한 교도관리는 순시사항을 자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29條【同 前】 소장은 독거수용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약간에 독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第30條【夜間獨居收容 등】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간에 독거수용된 자가 취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간이라도 독거실에 재실시켜야 한다.

第31條【混居收容】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수형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시키지 못한다.

第32條【同 前】 병자 또는 불구자인 수형자와 기타의 수형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거실에 수용하지 못한다. 다만, 간호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第33條【同 前】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34條【受刑者の 廉次 등】 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공장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는 문서 및 도서의 열독을 금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第35條【混居室의 代用】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第36條【居室 앞의 名札】 거실의 앞에는 명찰을 게시하고 그상부에는 재소자의 성명·연령·좌명·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형자번호 및 입소년월일을 각각 기재하여 상부의 난은 이를 음폐하여 두어야 한다.

第37條【混居室의 定員등의 表示】 혼거실에는 그 면적·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第38條【身體検査 등】 ①소장은 교도소등의 출입의 경계를 엄밀히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리이외의 자는 오전 9시이전 또는 오후 5시이후에는 당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第39條【在所者の 戒護 등】 ①교도소등의 의문·출입구·거실·공장 기타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의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일시 개방하는 때에는 그 요소를 수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일정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수를 하지 못한다.

第40條【在所者の 戒護 등】 교도관리는 당해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리의 참여없이 수형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재소자를 출실시키지 못한다. 다만, 병사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第41條【同 前】 교도소등의 구내에는 관람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호상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第42條【居室検査 등】 소장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매일 1회이상 거실을 검사시켜야 한다.

第43條【在所者の 身體検査】 소장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공장 또는 실외에서 환실하는 재소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시켜야 한다.

第44條【戒護上の 獨居收容】 소장은 재소자중 계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第45條【戒具의 使用】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第46條【同 前】 ①포승·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우승중의 재소자에게 방성구는 제3항에 불용하고 대성율을 발하는 재소자에게 각자 사용한다.

②제1항의 방성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사용할 수 있다.

第47條【武器의 使用報告】 소장은 교도관리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자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 20)

第48條【天災·事變時の 措置】 ①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를 신체상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第49條【接見時の 記録 등】 ①소장은 수형자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수형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의 접견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수사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第50條【接見時の 記録 등】 ①소장은 수형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수형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석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第51條【接見時の 場所】 수형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第52條【接見時の 用語】 수형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당해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第53條【接見時の 回数】 ①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는 10일에 1통, 금고 및 노역장유치의 수형자는 15일에 1통, 정역의 수형자는 1월에 1통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행성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서신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수형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석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第54條【接見時の 時限】 수형자의 접견시간은 30분이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第55條【同 前】 수형자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사이에 한하여 이동을 허가한다.

第56條【接見의 度數】 수형자의 접견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0일에 1회, 금고 및 노역장유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월에 1회에 한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차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성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접견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第57條【接見의例外】 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형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第58條【接見時の 記録 등】 ①소장은 수형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수형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의 접견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수사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석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第59條【接見의 場所】 수형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第60條【接見時の 用語】 수형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당해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第61條【書信의 回数】 ①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는 10일에 1통, 금고 및 노역장유치의 수형자는 15일에 1통, 정역의 수형자는 1월에 1통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차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성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서신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수형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석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第62條【書信의 檢閱】 ①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며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파하여 검인을 암호하여야 한다.

第63條【書信의 制限】 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신은 그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第64條【公務所로부터의 書信】 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재소자에게 송부되어 온 문서는 이를 개파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65條【書信作成의 制限】 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휴일 또는 휴게시간이 아니면 이를 작성하지 못한다.

第66條【書信의 代書】 재소자가 서신을 자서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이를 대서하여야 한다.

第67條【書信用紙 등】 재소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용지 및 우체료는 자변으로 한다. 다만, 자변할 수 없는자는 본인의 정상에 따라 관급할 수 있다.

第68條【書信등의 所持】 소장은 재소자에게 교부한 서신의 기타의 문서로서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그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第69條【書信檢閱의 迅速】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第70條【書信의 履棄】 소장은 서신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해당 수형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71條【不許可書信의 履棄】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소장이 이를 폐기한다.

第72條【書信檢閱의 措置】 소장은 접견의 참여와 서신의 검열에 있어 행성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에는 제1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62條【書信의 檢閱】 ①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며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파하여 검인을 암호하여야 한다.

第63條【書信의 制限】 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신은 그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처한 수형자를 이송으로 인하여 인수한 소장은 인수 후 3일 내에 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인수전에 집행개시 까지의 일수는 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150條 【護送者の懲罰執行】 수형자가 이송도중에 기울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정벌한다.

第151條 【懲罰의記錄】 소장은 재소자의 정벌에 관한 사항을 신분장부 및 정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 20>

第11條 假釋放

第152條 【假釋放審査委員委嘱의 報告】 소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53條 【假釋放審査對象者の基準 등】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 구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형기 3분의 1을 경과한 자로서 행정심사의 결과 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 1호 이외의 수형자로서 위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第154條 【假釋放具申의 節次】 위원장은 법 제 5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구신의 결정이 있었을 때는 그결정서에 판결서·형의 집행지시서의 등본·가석방심사조서 및 신원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第155條 【假釋放의 節次 등】 소장은 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허가에 의하여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때에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를 선고한 후 본인에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156條 【假釋放審査 등】 가석방의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5. 20>

第157條 【假釋放者の 遵守事項】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 할 것
2. 관할 경찰서의 감호를 받을 것
3.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호경찰서의 허가를 받을 것. 다만, 외국에 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158條 【假釋放者の 再犯報告】 소장은 가석방된 자가 형법 제 74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지득한 때에는 자체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그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2章 釋放

第159條 【釋放節次 등】 소장은 형기 종료·사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는 석방전 3일간은 독거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논고하여야 한다.

第160條 【滿期釋放者の 事前調査事項 등】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第161條 【釋放者の 行狀등通報】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

할 자의 성격 및 행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그의 보호를 인수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62條 【釋放者の 保護措置】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의 보호를 생생보호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9. 8. 29>

第163條 【滿期釋放의 日時】 소장은 형기 종료로 인한 수형자의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자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第13章 死亡 및死刑의 执行

第164條 【死刑執行後の 檢視】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상을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장을 물지 못한다.

第165條 【在所者死亡時の 措置】 ① 소장은 재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시체를 검시하여야 한다.

② 재소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의무관은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재소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관직과 성명 및 검시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166條 【同 前】 소장은 재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병력 및 사망연월일시를 자체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67條 【同 前】 소장은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 또는 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기타의 공무소에 시체를 송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168條 【同 前】 ① 소장은 제 1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의 묘지에 장지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③ 소장은 시체를 가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第169條 【同 前】 ① 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함장하였을 때에는 함장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함장부에 기재하고 함장장소에는 묘표를 세워야 한다.

② 제 1항의 묘표는 석물로 하여야 한다.

第14章 未決收容

第170條 【死刑受刑者の 收容】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71條 【未決收容者中共犯者の 隔離收容】 ①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②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관련된 자를 동행시키지 못한다.

③ 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第172條 【未決收容者の 逃走에 대한 措置】 ① 소장은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

실에 수용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그 사유를 자체없이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第173條 【未決收容者の 死亡등의 通報】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때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장은 자체없이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74條 【未決收容者の 作業등】 소장은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작업에 취업시키지 못한다.

第175條 【警察署留置場】 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에 설치된 미결수용실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第176條 【外部醫師의 診察등】 형사소송법 제 34조·제 89조·제 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전달을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附 則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79. 8.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81.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인권지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편

임종인 김기진 박수근 박승옥 박찬운
백승현 안상운 유선호 윤기원 이기욱
이덕우 이오영 이종걸 장주영 천정배

녹두